

기본연구보고서 2016-04

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거버넌스 구축 방안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

최 길 수

연구진

연구책임

- 최길수 / 상생협력실장

연구의 요약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의 적용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지역거버넌스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 연구의 주요내용은 저출산·고령화의 현황, 저출산·고령화가 미치는 파급효과, 저출산·고령화의 전반적인 추세, 대전광역시의 시청 공무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설문조사·분석, 그리고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

■ 연구의 방법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헌고찰과 일반시민 및 시청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연구방법을 설정하였음
- 문헌고찰에서는 한국과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 추이, 인구구조의 변화와 파급효과 및 그로 인한 도시문제,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정책시행계획의 개요(수립배경 및 2016년 정책 방향, 2016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자체사업 소요예산), 고령사회에 대한 거버넌스적 대응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논의
- 설문지는 구조화된 설문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일반적 인식(10문항),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대전시)의 역할(6문항), 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대전시)의 역할(5문항), 그리고 응답자의 특성 등으로 구성되었, 일반시민 302명, 시청 공무원 200명이 참여하였음

■ 연구결과

-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의 적용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지역거버넌스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 논의의 주요내용은 저출산·고령화의 현황, 저출산·고령화가 미치는 파급효과, 저출산·고령화의 전반적인 추세, 대전광역시의 시청 공무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설문조사·분석, 그리고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
 -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의 적용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지역거버넌스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일반시민 및 시청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연구방법을 설정하였다.
- 제2장 문헌고찰에서는 한국과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 추이, 인구구조의 변화와 파급효과 및 그로 인한 도시문제,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정책시행계획의 개요(수립배경 및 2016년 정책 방향, 2016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자체사업 소요예산), 고령사회에 대한 거버넌스적 대응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논의
- 제3장에서는 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는데, 설문에는 일반시민 302명, 시청 공무원 200명이 참여하였음
- 제4장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 우선 저출산·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시도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전광역시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정하여 매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①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모형 설계, ② 거버넌스체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③ 거버넌스체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④ 참여집단의 역할 및 기능 정립, ⑤ 거버넌스체계의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

■ 정책제안

- 저출산·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시도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전광역시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정하여 매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자치법규에는 ① 목적, ② 시 및 시민의 책무, ③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④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⑤ 기업·단체등 지원(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행정적 지원), ⑥ 임신출산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고령자 고용과 소득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저출산·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을 단위로 활동하는 많은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체계(저출산·고령사회대응민·관협의회)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단위의 주요한 행위주체인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NGO/NPO), 민간기업, 그리고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와 행위주체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대표성, 역할, 규칙)를 설명하는 모형을 설정해야 함
 - 저출산·고령사회가 가져올 제문제에 대해 민-관협치(거버넌스)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양한 민간·사회단체들이 참여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의 규정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함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체계에 참여하는 행위주체들은 공동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가 하면 활동배경에 따른 특수한 역할 및 기능이 정립되어야 함
 - 협의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의 추진단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목 차 >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문헌고찰	11
제1절 한국과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 추이	11
1.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추이	11
2.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 추이	13
제2절 인구구조의 변화와 파급효과	15
1. 인구구조변화의 파급효과	15
2. 인구구조변화와 도시문제	20
제3절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정책 시행계획	22
1. 수립배경 및 2016년 정책 방향	22
2. 2016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23
3.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자체사업 소요예산	26
제4절 고령사회에 대한 거버넌스적 대응의 적합성	26
1. 고령사회 대응에 있어 거버넌스 요소	26
2. 고령사회의 대응에 있어 거버넌스 접근의 유용성	28
3. 고령사회 대응의 거버넌스적 관점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9
제3장 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35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35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37
1.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일반적 인식	37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대전시)의 역할	44
3. 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대전시)의 역할	49
제3절 분석결과의 종합	53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59
제1절 법규의 정비	59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관련된 법규	59
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관련된 시·도의 자치법규	60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대전광역시의 법규정비 방안	62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	62
1.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모형 설계	62
2. 거버넌스체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63
3. 거버넌스체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64
4. 참여집단의 역할 및 기능 정립	65
5. 거버넌스체계의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	67
제5장 결론 : 요약 및 정책제언	71
제1절 요약	71
제2절 정책제언	72
참고문헌	77
부 록	87

표 목 차

<표 2-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대전/전국 비교)	13
<표 2-2> 대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비율	14
<표 2-3>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변동	16
<표 2-4> 건강보험료의 수입 및 지출 증가율 전망	19
<표 2-5>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실행계획의 공통분야 주요내용	24
<표 2-6>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실행계획의 자체분야 주요내용	25
<표 2-7>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자체사업 소요예산	26
<표 3-1> 응답자의 개인별 특성	36
<표 3-2> 저출산·고령사회의 영향력 체감도	37
<표 3-3> 저출산·고령사회가 가져올 미래사회의 심각한 위협요인	38
<표 3-4> 과거 10년간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 인식 ...	39
<표 3-5>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인지도	39
<표 3-6> 향후 10년 이내 출산율 회복 전망	40
<표 3-7> 결혼 후 원하는 자녀수	41
<표 3-8> 은퇴 후의 만족한 삶에 대한 기대	41
<표 3-9> 은퇴 후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의지	42
<표 3-10>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급한 대책	43
<표 3-11> 고령사회에 대한 시급한 대책	43
<표 3-12>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관(단체)의 역할 중요도	44
<표 3-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전시의 시책	45
<표 3-14> 저출산 극복을 위해 대전시의 시급한 과제	46
<표 3-15>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합한 대전시의 과제	47

<표 3-16> 향후 10년간 대전시의 인구 증감에 대한 견해	48
<표 3-17> 향후 10년간 대전시의 인구 유출입에 대한 견해	48
<표 3-18> 고령화에 대응하는 있어서 기관(단체)의 역할 중요도	49
<표 3-19>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시의 시책	50
<표 3-20>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시의 시급한 과제	51
<표 3-21> 고령화에 대응을 위한 적합한 대전시의 과제	52
<표 3-22> 대전지역에서의 고령인구 생활환경 인식	53
<표 4-1>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시도의 자치법규	61

그림 목 차

<그림 2-1> OECD 회원국의 출산율 및 첫 출산연령	11
<그림 2-2> 우리나라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2
<그림 2-3> 노인인구 비율 추이 및 예측	13
<그림 2-4>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4
<그림 2-5> 대전의 노인인구와 유소년인구 추계(2010-2040)	15
<그림 2-6>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체계	23
<그림 4-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모형	6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 감소와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급속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겪고 있다. 이는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의 속도가 빨랐던 만큼 고령화의 속도 또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국회예산처, 2009: 3).¹⁾ 저출산·고령화는 사회전반에 걸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더불어 노동력 고령화가 심화되어 노동생산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부담이 증가되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근로연령의 상승, 소비·저축·투자 위축과 정부의 재정수지의 위기는 총체적으로 잠재성장을 둔화를 야기시키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0: 6).²⁾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현상은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와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의 인구수는 2010년 536만명에서 2026년에는 2배인 1,022만명, 그리고 2040년에는 3배인 1,54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의료 및 생활보장이 더 필요한 80세 이상 후기 고령층이 2010년 95만명에서 2050년 613만명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³⁾

-
- 1)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용어는 사회전반이 고령화·노후화되어가는 현상을 나타내는 “고령사회”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 2) 한국의 합계출산율(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 15~49세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수)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06명으로 감소 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1.3명 미만에서 등락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1.21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대한민국정부, 2015 : 10). 따라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020년 377천명, 2050년에는 226천명으로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저출산 추세가 유지될 경우 2100년까지 한민족 총 인구는 2010년 인구 4,887만명의 50.5%인 2,468만으로 축소되어 OECD 선진국 23개국 중 2100년까지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는 9개국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단지 3개국만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강성원, 2010: 2).
 - 3) 노인인구의 비중은 2010년 11%에서 2025년 20%, 2050년에는 40%에 도달하여 유럽국가와 일본을 제치고 OECD 국가 중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다(대한민국정부, 2010: 4).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인구가 7%)로 접어든 이래, 2018년에 고령사회(65세 인구가 14%), 2026년에 초고령사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산·고령화가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인식하여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의 중장기적인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계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06~2010년까지, 제2차는 2011~2015년, 제3차는 2016~2020년까지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다. 정부(지방정부 포함)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분석해 보면, 종합적이기 보다는 특정영역에 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저출산 분야는 보육지원 분야에 편중돼 있고, 고령화 부문은 기초노령연금 분야에 집중돼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성공적 대응을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참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분의 참여부족으로 실천의 효과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국민전체가 참여하는 범사회적 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추진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동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관협치(거버넌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거버넌스(governance)란 기존의 불평등하고 정부 우위의 시장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최길수, 2014 : 40, 재인용).

회(65세 인구가 20%)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소요연수는 65세 인구가 7%~14%까지 이르는 기간이 18년, 14%~20%까지 걸리는 기간은 8년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소요연한이 가장 짧다. 2009년 UN보고에 의하면 2050년에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연령의 키순으로 일렬로 세워 단순히 균등하게 2등분하는 연령)'이 53.7세로 2009년 37.3세에 비하여 16.4세가 증가할 것이며,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위연령이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민재, 2009: 9).

고령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정부주도의 정책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촉발시키는 범국민운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고령사회의 대응을 위한 국민운동화는 정부, 기업, 시민단체, 그리고 종교단체 등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거버넌스체계를⁴⁾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모든 구성요소들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에 대해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려는 사례가 거의 없음은 물론 학술적인 관점에서조차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거버넌스 개념을 연계하려는 선행연구들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정책을 통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고자 하는 시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체계의 구축과 같은 사회 각 부문의 참여는 활발하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지역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길수, 2014 : 40). 한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연계하여 다루다 보니 각 부문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안이 제시되기 어려운 점도 지적된다. 물론 이 두 가지 주제는 연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한꺼번에 다루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인이 나오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정부의 담당부서가 중첩이 되어 주체의 문제가 제기 되기도 한다. 저출산문제는 여성가족부소속이 지방이며, 자치단체에서는 여성가족국이 다루고 있는데 반해 노령화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주로 다루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건복지국에서 다루고 있어서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울 수 있는 한계를 지닌다(최길수·허철행, 2016 : 43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의 적용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지역거버넌스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4) 거버넌스(governance)란 기존의 불평등하고 정부 우위의 시장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최길수·허철행, 2016: 431, 재인용). 그러나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민간단체(전문가집단), 종교단체,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례를 아직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적 범위는 저출산·고령화의 추세, 제문제, 지방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대한 거버넌스 실태분석, 그리고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의 현황, 저출산·고령화가 미치는 파급효과, 저출산·고령화의 전반적인 추세(세계적인 추세, 국내의 추세, 대전광역시)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의 시청 공무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함의를 통해 대전광역시의 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시간적(종단면적) 범위에 있어서 저출산·고령화의 현상, 추세 그리고 장래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과거의 통계자료와 파급효과에 관한 2050년 또는 2100년까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과거 통계자료는 추세분석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장래의 추세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전망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23개 OECD 국가를 가장 큰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그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대책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 시도자치단체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 필요에 따라 소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앞서 제시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우선, 세계적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OECD

에서 발간하는 통계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 등에서 발간하는 통계와 연구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서는 대전광역시에서 발간하는 통계자료와 현황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둘째, 이론적 배경은 문헌고찰을 통해서 다루는데, 여기서는 고령사회에서 나타나는 도시문제, 저출산·고령화와 거버넌스의 의미, 관련 선행연구,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 등을 검토한다.

셋째, 대전광역시 시민과 공무원들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시민 및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분석한다.

제2장 문헌고찰

제1절 한국과 대전광역시의 저출산·
고령화 추이

제2절 인구구조의 변화와 파급효과

제3절 고령사회에 대한 거버넌스적
대응의 적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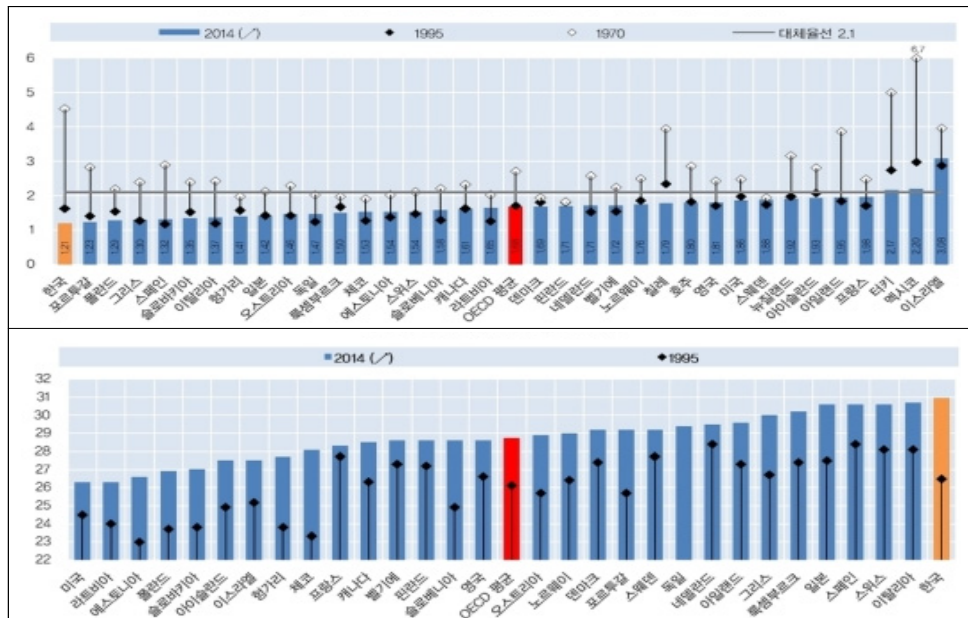
제2장 문헌고찰

제1절 한국과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 추이

1.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추이

한국의 여성 1인당 자녀 수는 1.21명(2014)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OECD 전체적으로는 1970년 2.7명에서 2014년 1.7명으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여성의 첫 출산연령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상승해(지연돼) 왔는데, 한국은 1995년 26.5살 이었던 것이 2014년 31.0살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 출산하는 국가이다(박영삼,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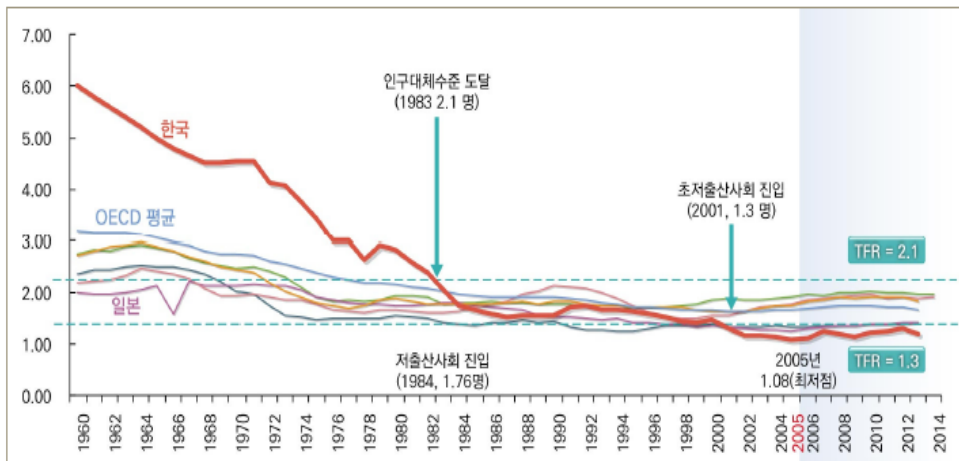
<그림 2-1> OECD 회원국의 출산율 및 첫 출산연령



자료 : 박영삼, 2016.

한국은 30년 이상 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2.1 미만)이 지속되고 있는데, 합계출산율(가임기여성 1명당 평균출생아수)이 1960년 6.0명에서 1983년 인구대체수준(2.06명 이하)으로 감소 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년 간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3 미만)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OECD 국가 평균 합계출산율은 40여년에 걸쳐 3.65명(1960)에서 1.63명(2002)까지 감소 하였으나, 이후 반등하여 1.7명 수준 유지하고 있다. OECD에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초저출산현상)을 경험한 국가는 11개국(한국 포함)이나,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초저출산현상에 탈피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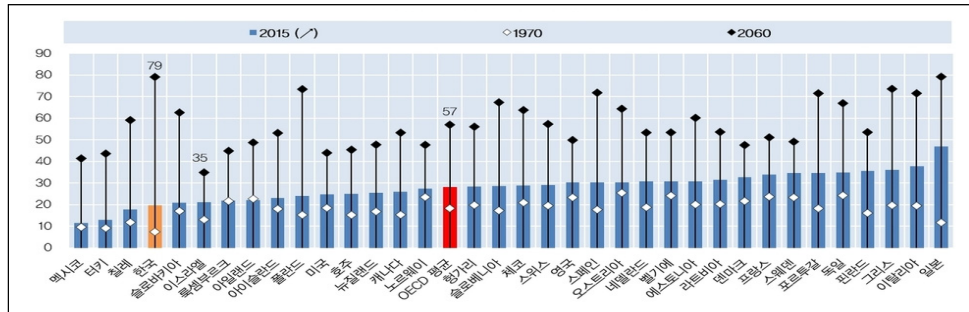
<그림 2-2> 우리나라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자료 통계청, 출생통계; OECD Family Database, 2015.

한국은 고령화가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다. 20~64살 성인 인구 대비 65살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4년 현재 20%로 OECD 평균 28%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대로 갈 경우 2060년 한국의 같은 상대적 노인인구 비율은 79%에 달해 일본과 함께 OECD 최고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박영삼, 2016).

〈그림 2-3〉 노인인구 비율 추이 및 예측



자료 : 박영삼, 2016.

2.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 추이

2015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전년(1.21명)대비 2.5% 증가, 2015년 전국 출생아수는 438,700명으로 전년 대비 3,300명(0.8%) 증가하였으며, 대전광역시의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8명으로 전국 평균(1.24명)을 상회하고 특·광역시 중 세종(1.90명), 울산(1.49명) 다음으로 높으며, 2015년 출생아 수는 13,800명으로 전년 대비 200명(-1.4%) 감소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6: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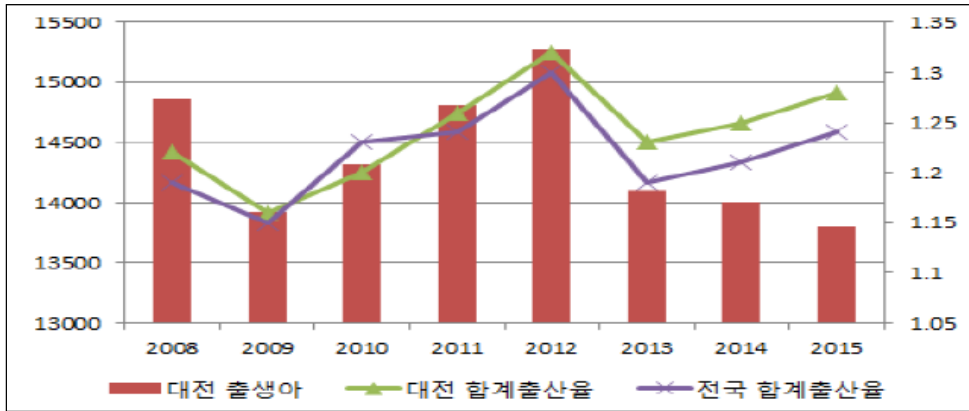
〈표 2-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대전/전국 비교)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전 출생아 (증가율)	14,315 (2.9%)	14,808 (3.4%)	15,279 (3.2%)	14,099 (△7.7%)	14,000 (△0.7%)	13,800 (△1.4%)
대전 인구	1,503,664	1,515,603	1,524,583	1,532,811	1,531,809	1,518,775
대전 합계출산율	1.20	1.26	1.32	1.23	1.25	1.28
전국 합계출산율	1.23	1.24	1.30	1.19	1.21	1.24

자료 : 통계청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 시도별 출생아수(2016년 2월 잠정치)

<그림 2-4>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6: 172.

대전광역시의 고령화 추이는 연도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2008년 8.05%인 대전시 노인 인구는 매년 평균 0.3%이상 증가하고 있어 2020년 12.9%, 2030년 21.0%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도 향후 30년간 전국 평균 4.6배 증가 전망되고, 10년 내에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 보다 많은 인구 역전현상, 생산 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변동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6: 172-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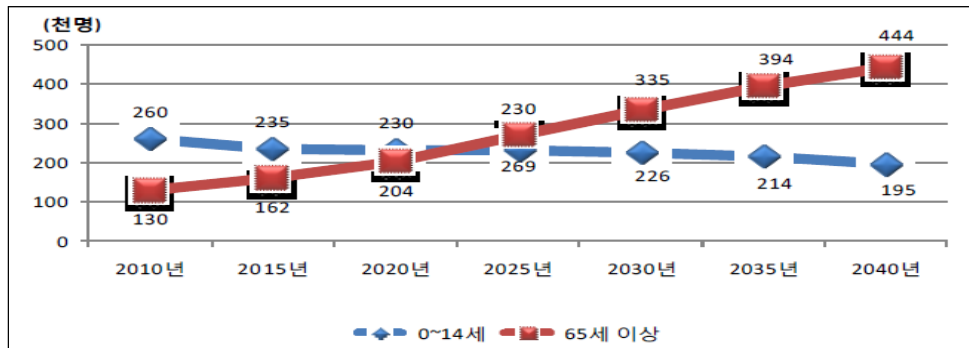
<표 2-2> 대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비율

(단위 : 명,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전인구	1,480,895	1,484,180	1,503,664	1,515,603	1,524,583	1,532,811	1,531,809	1,518,775
노인인구	119,22	124,520	130,245	135,740	142,979	150,651	158,329	165,528
노인비율	8.05	8.39	8.66	8.96	9.38	9.83	10.33	10.90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그림 2-5〉 대전의 노인인구와 유소년인구 추계(2010-204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10-2040

제2절 인구구조의 변화와 파급효과

1. 인구구조변화의 파급효과

1) 인구학적 파급효과

초저출산현상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장래인구는 필연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8년에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2050년에는 4,234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임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총인구는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100년에 2,12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최길수, 2014 : 41, 재인용).

한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에 3,619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에 2,242만명, 2100년에는 944만명(1/4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인인구(65세이상)는 2008년 5백만명(2010년 536만명)에서 2018년 7백만명, 2030년에 1,181만명, 2050년 1,616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새로운 노인인구가 출생아수를 상회하기 시작하고, 2016년에는 유소년인구(654만명)가 노인인구(659만명)보다 적어지는 ‘인구역전현

상* 이 발생하게 된다(최길수, 2014 : 41, 재인용).

또한, 인구고령화 수준(65세 노인비율)은 2050년에 38.2%, 2100년에는 46.9%로 급상승 하여 2040년 전후 세계최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화사회(노인비율 7%)에서 고령사회(노인인구 14%)로 이행하는데 18년이 소요되어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6년에 초고령사회(노인비율 20%)로 이행하게 된다. 이러한 고령화의 현상으로 인해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세대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최길수, 2014 : 41, 재인용).

<표 2-3>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변동

(단위: 천명, %)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
총인구	48,875 (100.0)	49,277 (100.0)	49,326 (100.0)	49,108 (100.0)	48,635 (100.0)	47,734 (100.0)	46,343 (100.0)	44,521 (100.0)	42,343 (100.0)
유소년인구 (15세미만)	7,907 (16.2)	6,733 (13.7)	6,118 (12.4)	5,778 (11.8)	5,525 (11.4)	5,231 (11.0)	4,777 (10.3)	4,220 (9.5)	3,763 (8.9)
생산가능인구 (15-64세)	35,611 (72.9)	36,163 (73.4)	35,506 (72.0)	33,562 (68.3)	31,299 (64.4)	28,954 (60.7)	26,525 (57.2)	24,503 (55.0)	22,424 (53.0)
노년인구 (65세이상)	5,357 (11.0)	6,381 (12.9)	7,701 (15.6)	9,768 (19.9)	11,811 (24.3)	13,549 (28.4)	15,041 (32.5)	15,798 (35.5)	16,156 (53.0)
총부양비	37.2	36.3	38.9	46.3	55.4	64.9	74.7	81.7	88.8
유년부양비	22.2	18.6	17.2	17.2	17.7	18.1	18.0	17.2	16.8
노년부양비	15.0	17.6	21.7	29.1	37.7	46.8	56.7	64.5	72.0
잠재적부양비	6.6	5.7	4.6	3.4	2.6	2.1	1.8	1.6	1.4

자료: 최길수, 2014: 42, 재인용.

2) 경제적 파급효과

저출산·고령화로 저축율이 하락하면서 자본스톡 증가율이 2006-2010년 기간 중 연평균 5.8%에서 2041-20150년 1.6%로 둔화 감소될 전망이다. 최근의

저출산현상이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06-2010년 기간중 연평균 4.8%에서 2041-2050년에 1.2%로 둔화되고 그 이후 2075년까지 0.7-0.9%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2050년까지 GDP 증가율은 취업자 증가율의 감소세 전환, 피부양인구 비율의 빠른 상승 등 고령화 효과로 인하여 비교적 빠른 속도로 둔화될 것이다(최길수, 2014 : 42, 재인용).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을 정점(2,619만명, 총인구의 73.4%)으로 감소, 핵심근로계층(25~49세)은 2007년 2,06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에 이미 합계출산율이 1.6 수준 대에 접어든 결과, 20년 후인 2000년부터 젊은층 노동력이 감소하기 시작되었으며, 2002년 이후 1.2 이하 수준으로 낮아진 출산율의 효과는 2020년 이후 경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0년 현재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약 25%미만인데 비해 2050년에는 그 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핵심노동력(25~49세)의 취업자 비중은 2000년 66%에서 2050년에 44%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을 통제할 경우, 55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1%p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은 0.09~0.1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동인구의 고령화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1.8%에서 2040년 1.1%로 감소할 전망이다(최길수, 2014 : 43, 재인용).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세입기반인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여 연금, 의료비 등 복지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사회보장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2020년 보건의료 및 교육 등 사회보장지출의 확대에 총지출은 37%증가하는 반면, 총세입은 15%만 증가하여 재정수지는 35조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년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도입되어 있는 복지제도에서 공적연금, 공적의료, 노인복지, 기초생보 등의 지출소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지출증가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이며, 재정상태를 안정화 하고자 한다면 조세부담(국민부담)의 대폭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다. 즉, 인구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일인당 조

세부담은 2050년에 현재보다 85~106만원, 일인당 국민부담은 현재보다 130~150만원 정도 상향될 것이다(최길수, 2014 : 43, 재인용).

2) 사회적 파급효과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사회보장비 등 복지부담 급증으로 인하여 세대간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규모 축소로 이어져 잠재성자를 하락과 함께 사회보장 재정부담이 급증하게 되는 것이 불가피 하다(최길수, 2014 : 43, 재인용).

저출산의 영향으로 2055년 국민연금 가입자수가 수급자수보다 적어질 전망이다. 제도부양비(가입자대비 노령연금수급자수)는 2008년에 10.3%이나, 제도가 성숙하고 인구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5년에 119.7%로 최고점에 이른 이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60년 보험료 수입은 총지출의 39% 수준에 불과하여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이나 대규모의 국고보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최길수, 2014 : 43, 재인용).

보험료를 지불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수와 건강보험의 수혜를 받는 적용인구 수 차이가 매년 벌어져 향후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로 전체 보험료 수입에 비해 보험급여 지출이 더 커져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위험도가 증가할 것이다. 보험료적자가 2011년 9.3조원에서 2030년 37.2조원으로 급격 증가하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누적적자는 2030년 3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기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국민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2017년에 당기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매년 8%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최길수, 2014 : 43, 재인용).

〈표 2-4〉 건강보험료의 수입 및 지출 증가율 전망

(단위: 억원)

연도	전체수입	증가율	전체지출	증가율	당기수지
2011	314,254	-	364,039	-	-49,785
2015	397,026	4.81%	476,831	6.47%	-97,805
2020	480,279	4.90%	630,244	5.42%	-149,965
2025	598,737	4.52%	807,259	4.91%	-208,522
2030	745,570	4.32%	1,020,540	4.797%	-274,970

자료: 최길수, 2014 : 44, 재인용.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교육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생아수가 적은 지역에서 학교통폐합이 불가피하나 지역중심교육의 중요성 무시등에 폐단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수요의 감소로 교원수급조정이 필요하고, 대학의 미충원 증가로 대학의 슬림화(대학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 및 그로 인한 내실 있는 고등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하게 된다. 출산을 감소는 청년인력 감소현상을 유발하여 병역수행가용 자원의 감소를 초래한다. 현역가용자원은 2010년 32만명에서 2020년 29만명, 2025년에는 21만명(2010년 규모의 66%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최길수, 2014 : 44, 재인용).

마지막으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가족분화가 더욱 촉진되고, 특히 노인부부 및 노인단독 가구 증가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의 사적 부양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조차 어렵게 하는 사회·문화·경제적 여건속에서 일종의 ‘강제된 선택’의 결과이다. 한국 여성들은 평균 2.3명의 자녀를 두고 싶어하지만 현실은 합계출산율이 1.0명에 근접하는 저조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최길수, 2014 : 44, 재인용).

2. 인구구조변화와 도시문제

인구저성장 및 감소, 고령화, 독신화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도시경제, 주택 및 기반시설 수요, 도시토지이용에 변화를 유발한다. 물론 도시마다 인구구조변화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므로 도시간 영향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공통의 과제가 될 것이다.

1)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도시경영능력 저하

인구의 저성장과 고령화 추세는 도시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보다 주로 부정적인 효과를 보일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먼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총부양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를 위해 지급되는 각종 연금과 복지시설과 같은 사회복지비의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반면에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 한 세수가 줄어들게 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 전반적인 도시관리 능력은 저하될 것이다(최길수, 2014 : 45, 재인용).

2) 인구감소에 따른 기존시가지의 활력성 저하

인구의 저성장 또는 감소는 도시의 전체적인 토지이용수요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수요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에서는 주택 및 도시용 토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줄어들어 기성시가지의 정비나 재개발 등이 부진하여 현재보다 도시환경이 노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도시기능 이용계층이 줄어들어 공장, 공공편익시설 등을 유지하기 어려워 빈 건물로 남겨져나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상태가 늘어날 것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가계소비지출도 감소하게 되므로, 특히 그동안에도 대형판매 점포등이 교외화 하면서 기능이 빠져 나가는 기존시가지의 중심상업지구와 근린상업지구의 상점가는 점점 더 활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최길수, 2014 : 45, 재인용).

3)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도시시설의 수요변화

저출산에 따라 수요감소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시설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는 정규교육시설이다. 각급 학교의 폐쇄사례가 향후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다. 반면에 유년층의 경우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탁아소, 유치원등 교육복지시설은 지금도 아직 충분하게 공급하고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맞물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계층을 위한 주거, 의료, 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취업을 돕기 위한 재교육시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현재에도 노인복지시설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맞물려 향후에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최길수, 2014 : 45-46, 재인용).

4) 고령화와 독신가구 증대에 따른 토지이용 수요변화

노인가수와 독신가구의 증대는 편리성과 젊음에 대한 추구로 도시지역으로의 회귀경향도 커져 갈 것이다. 인구감소로 인해 기존시가지가 노후화하고 상업지역의 활력이 저하되지만 노인과 독신계층의 도시회귀는 하나의 기회요소가 될 수 있다. 반면에 특정계층이 도심에 집중됨으로써 독특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으나 커뮤니티로서 구성원간의 친밀성은 저하될 수 있다(최길수, 2014 : 46, 재인용).

5)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중소도시생존에 영향

도시유형별로 그 영향정도에 따라 상당히 다른 상황을 낳게된다. 특히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기존의 인구가 2-3만 인 이하의 읍지역들은 점차 최소한의 필요한 공공시설, 근린편익시설과 대중교통수단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인구가 20-30만 명에 미치지 못했던 도시들은 인구감소로 인하여 종합병원, 문화회관, 대형판매점

등 상위도시기능을 더욱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들 도시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보다 큰 도시에 의존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최길수, 2014 : 46-47, 재인용).

제3절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정책 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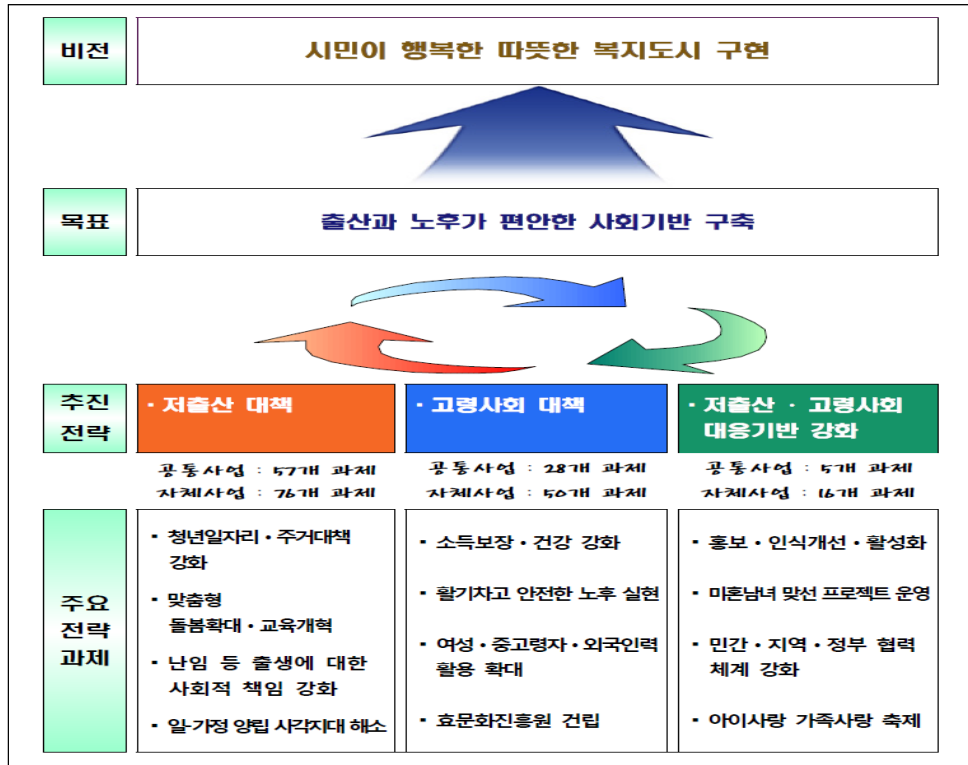
1. 수립배경 및 2016년 정책 방향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⁵⁾ 의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2016~2020)에 따라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또한 대전광역시의 2016년 저출산·고령화 정책 방향은 ①저출산·고령사회에 성공적 대응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함으로써 활력 있는 선진 도시 지향, ②각 분야 과제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보완하는 맞춤형 선순환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나눔과 상생의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 ③가족친화 문화 확산, 보육시스템 개선, 고령자 고용 등 기업·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적 책임의식 확산, ④사회 각 분야의 영향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맞춤형 가구, 베이비부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의 체감도 및 실효성 제고 등이고(대한민국정부, 2016: 177), 그 추진체계는 <그림 2-6>과 같다.

5)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림 2-6〉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체계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6 : 178.

2. 2016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수립한 201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실행계획은 3대 공통분야(저출산 대책, 고령사회 대책, 저출산·고령사회 기반강화)와 3대 자체분야(출산이 행복한 수범도시 육성, 안정된 생활·건강한 노력·활기찬 노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2-5>와 <표 2-6>과 같다.

<표 2-5>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실행계획의 공통분야 주요내용

분야	주요내용
저출산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 대전일자리 종합박람회 개최,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양성사업, Good-Job 청년인턴십 -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난임부부 지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서비스 내실화,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 활성화,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강화 -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 보육·교육비지원확대, 가정양육수당 지원확대, 교사근무환경개선비지원, 초등학교 종일돌봄교실 운영, 이웃간 돌봄나눔사업 활성화, 사교육부담 경감, 공공 어린이집 확충(기능보장), 보육돌봄 서비스(인건비) 지원 -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추진, 스마트근로감독 시스템 구축,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기반마련 지원,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프로그램 확대
고령사회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소득보장·건강 강화 : 기초연금 내실화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 노인 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노인구강검진 서비스 제공,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효문화진흥원 건립, 노인 학대 예방 인프라 구축 - 여성·중고령자·외국인력 활용 확대 :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립,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개선,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지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지역·정부 협력체계 강화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미혼남녀 만남기회 제공,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홍보 프로그램, 아빠 요리교실 및 부모교육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6 : 179-180, 재구성.

〈표 2-6〉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실행계획의 자체분야 주요내용

분야	주요내용
출산이 행복한 수범도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고용·임신·출산부담 경감 :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 지원금,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중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허니문 베이비 축하나눔 - 다양한 가족, 아동·보육·돌봄·공교육 강화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민원상담창구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선도활동 강화, 청소년 안전 시민순찰대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지원, 사립유치원 평가 내실화,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확대 -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 생일맞이 직원 구청장과의 간담회 개최, 동구청 가족 사랑의 날 운영, Family Day운영, 통근버스 이용 임신부 직원 배려사업,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기반마련지원,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안정된 생활, 건강한 노년, 활기찬 노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소득보장·건강 강화 : 시니어클럽과 연계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꿈나무지킴이 사업, 시노인복지관 청춘카페 운영, 출산장려를 위한 시니어 교육 및 취업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 시니어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경로목욕권 지급, 유산균 음료 배달, 경로당 쌀 지원, 경로당 급식도우미 운영 - 여성·중고령자·외국인력 활용 확대 : 여성 취·창업박람회 개최,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지역·정부 협력체계 강화 : 미혼남녀 맞선 프로젝트 운영, 심통방통(心通旁通) 내 짝을 찾아라 - 홍보·인식개선·활성화 : 출산장려 언론캠페인 등 홍보, 다자녀가정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서람이 자치대학 운영, 가족행복 사진 공모전, 아이사랑 가족사랑 축제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6 : 180-181, 재구성.

3.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자체사업 소요예산

대전광역시는 2016년에 저출산·고령사회 자체사업 142건을 추진하는데 총 113,102.4백만원을 투입하는데, 이는 2015년 예산에 비해 7.5% 증가한 것이다. 부문별로는 저출산 대책이 76건에 51,737.5백만원, 고령화 대책이 50건에 48,355.4백만원, 대응기반 강화는 16건에 13,009.5백만원 등이 투자된다.

<표 2-7>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자체사업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부문별	2015년	2016년	증감(%)	과제수
합계	105,245.4	113,102.4	7,857(7.5)	142
저출산 대책	45,085.9	51,737.5	6,651.6(14.8)	76
고령화 대책	47,564.9	48,355.4	790.5(1.7)	50
대응기반 강화	12,594.6	13,009.5	414.9(3.3)	16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6: 9.

제4절 고령사회에 대한 거버넌스적 대응의 적합성

1. 고령사회 대응에 있어 거버넌스 요소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을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정부부문, 사회단체, NGO, 종교단체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또한 다양한 행위주체 내에서도 다양한 계층의 참여자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각각의 주체는 상호 독립적이지만, 정부는 아주 우월하지는 않지만 네트워크 관리자

의 역할을 해야 한다.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은 계층제하에서 보다는 덜 종속적이며, 시장체제의 구성원보다는 더 종속적이다. 네트워크의 참여자간에 상호의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자금, 물자, 정보 등을 다른 참여자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주체 간에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한 정보 및 물자만을 얻으려고 하기 보다는 다른 참여자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최길수·한형서, 2011 : 194-195).

둘째, 자원을 교환하고 목적을 공유할 필요성을 지닌 네트워크 참여자 간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사회의 자기조절능력이 강조되고, 공동규제, 공동조절, 공동생산, 공동지도가 정부의 전통적인 하향적이고 집권적인 성향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주체와 계층은 타율 또는 자치성을 벗어버리고 협력지향적인 인식전환이 요구되어 진다고 하겠다(최길수·한형서, 2011 : 195).

셋째, 상호작용은 신뢰와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네트워크의 참여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설정한 게임의 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상호신뢰나 우호관계로서 거버넌스를 하나의 게임으로 인식한다면 게임 참여자들 상호간의 신뢰가 확보되지 못하면 실제적인 거버넌스의 작동은 불가능하다(최길수·한형서, 2011 : 195, 재인용).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거버넌스의 게임의 규칙이 공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참여자 상호간의 신뢰, 존경, 그리고 권한의 명확화가 요구되어 진다(최길수·한형서, 2011 : 195).

넷째, 네트워크는 정부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지니고 있으며, 네트워크 내에서 정부의 역할은 사회·정치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조장하는 것이다(최길수·한형서, 2011 : 195, 재인용). 이와 같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거버넌스가 구축되면 지방정부는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모색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최길수·한형서, 2011 : 195).

2. 고령사회의 대응에 있어 거버넌스 접근의 유용성

거버넌스 이론은 다원주의 정치체제가 정착되고, 후기 산업사회에 접어든 선진국들의 국정운영에 대한 경험을 배경으로 발전되어 온 이론이다.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분명 비정부 부문의 역할은 정부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협력적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거버넌스 체제는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할 수 있는 협력적 조정기구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나아가 각각의 행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총체적으로 집약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최길수·한형서, 2011 : 195, 재인용).

대부분의 공공정책의 경우 행위자와 수혜자가 직접적 이해당사자들 간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에 비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정책의 경우 정책결정의 결과 및 정책의 영향이 특정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파급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추진은 다양한 행위자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여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모델이 다양한 측면에서 유용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우선,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는 주체는 정부(지방정부 포함), 시장,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종교단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려고 하면 많은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최길수·한형서, 2011 : 195).

둘째,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또는 정책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하는데 있어 거버넌스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많은 장점들이 있다. 정책의제 설정 과정에서 민간부분의 참여는 유연한 아이디어, 다양한 정보, 정부 정책오류 시정 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 네트워크에 참여한 시민사회는 여론형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각성을 확산시키고 시민들의 의식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그밖에 거버넌스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정책의 목표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다(최길수·한형서, 2011 : 196).

셋째, 정부는 거버넌스를 형성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보력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면 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정부부문 내에서만 돌게 된다.

넷째, 거버넌스는 정부, 시민단체, 관료와 시민 등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민주성을 지향하게 되어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하여 관료제 원칙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지만 관료들이 민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간의 지원과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는 분위기 때문에 서로 대응한 입장에 선다(최길수·한형서, 2011 : 196, 재인용). 즉 협력적 파트너십, 공동생산 노력, 민간참여 증대 등의 요소는 거버넌스의 고유 특성인데, 범 국민적인 인식을 공유해야 하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책의 추진에서 유용하게 작용한다. 또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는 정부관료제에 비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순발력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최길수·한형서, 2011 : 196).

3. 고령사회 대응의 거버넌스적 관점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거버넌스에 관한 국내의 연구경향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특정 공공정책을 사례로 들어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본 연구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사례를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단지, 특정 사회복지 분야를 사례로 선정하여 거버넌스의 이론을 적용한 연구결과들은 다수가 존재한다. 또한, 거버넌스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정부(지방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실태와 발전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가 존재한다(최길수·한형서, 2011 : 196).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김한구(2004)는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과 선진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뉴거버넌스적 이론모형에 입각한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① 법적 측면에서 [노인복지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연령규정을 노인복지 측면과 노인고용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연령규정을 통일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연령규정을 축소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②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를 통해 사업분야, 세부사업내용, 고용대상 고령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화된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체제의 개편, 고령자 고용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추진주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구축하지는 것이다. ③ 고령자 고용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설립하자는 것이다(최길수·한형서, 2011 : 196-197).

장현주(2009)는 지역복지 거버넌스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대상으로 협의 능력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으로 ① 향후 협의체 운영은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되 민간의 주도와 공공의 지원구조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③ 수평적·수직적 의사소통을 통해 의사소통의 채널을 다양화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최길수·한형서, 2011 : 196-197).

선명순(2007)은 한국의 지역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에서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민관 공동 협력체로서의 협력적 거버넌스체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연구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결론은 ① 서비스를 집행하는 기관의 전문성 유무와 과중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비전문인력 등의 형태로 조직화하여 지역복지서비스 전달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 서비스내용이 지역복지 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③ 수요자가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④ 지역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주체들간의 원활한 협력과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최길수·한형서, 2011 : 197).

유해숙(2004)은 지역사회에서 나타난 거버넌스 사례를 중심으로 거버넌스의 결정요인, 유형,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에서 거버넌스의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① 정부와 지역복지운동의

권력관계와 이해관계가 거버넌스의 결정요인이며, 이들 관계의 변화에 따라 거버넌스의 유형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② 지역복지운동이 의지와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역복지운동의 권력을 증대 시키는 요인으로 조직구조, 전문성, 집합적 행동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집합적 행동이 지역복지운동 권력의 핵심요인이라 분석하였다. ③ 정부와 지역복지운동의 이해관계는 거버넌스 유형을 변화시키는 주요 변수이다. ④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조건이 동일하다면, 협력적 거버넌스가 지역복지운동에게 있어 보다 유리한 정책결정 모형이라는 것이다(최길수·한형서, 2011 : 196-197).

앞서 논의한 저출산·고령화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이론을 적용한 연구와는 달리, 선우덕 외(2006)와 최종암(2008)의 연구는 이것의 추진주체로서 지방거버넌스가 아닌 지방정부를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선우덕 외(2006)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와 관내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추진조직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최길수·한형서, 2011 : 197-198).

최종암(2008)은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지방정부의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론은 첫째로 지방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복지참여가 중요한데, 이를 유도하는 정책은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의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정보의 완전한 공개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둘째로 복지전담 조직 및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하는데, 이것은 복지전달체계의 통합과 공사적 복지체계의 구축 및 확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서비스 구축, 복지인력의 적정수요 예측 및 평가체계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최길수·한형서, 2011 : 198).

제3장 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3절 분석결과의 종합

제3장 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6년 10월 13일부터 16일 사이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전시청 공무원 및 일반시민 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의 주요 내용은 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10개 문항, ②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대전시)의 역할 6개 문항, ③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대전시)의 역할 5개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502명 중 일반시민 응답자 302명의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141명(46.7%), 여성이 161명(53.3%) 참여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5명(21.5%), 30대가 56명(18.5%), 40대가 75명(24.8%), 50대가 66명(21.9%), 그리고 60대 이상이 40명(13.2%) 참여하였다. 학력별로는 초졸 이하가 4명(1.3%), 중졸이 27명(8.9%), 고졸이 44명(14.6%), 전문대졸이 93명(30.8%), 대졸이상 132명(44.4%) 등이 참여하였다. 거주지별로는 동구가 17명(5.6%), 중구가 11명(3.6%), 서구가 116명(38.4%), 유성구 64명(21.2%), 대덕구 94명(31.1%) 등이 참여하였다. 출생지별로는 대전지역이 95명(31.5%), 충청지역이 108명(35.8%), 호남지역이 30명(9.9%), 영남지역이 29명(9.6%), 수도권이 40명(13.2%) 등이다.

또한, 대전시청 공무원 응답자 200명의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133명(66.5%), 여성이 67명(33.5%)이 참여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명(4.0%), 30대가 24명(12.0%), 40대가 75명(37.5%), 50대가 92명(46.0%), 그리고 60대 이상이 1명(0.5%) 참여하였다. 직급별로는 4급이 2명(1.0%), 5급이 37명(18.5%), 6급이 81명(40.5%), 7급이 67명(33.5%), 8급이 6명(3.0%), 9급이 7명(3.5%) 등이다. 경력별로는 2년 이하가 11명(5.5%), 3~5년이 3명(1.5%), 6~10년이 10명(5.0%), 11~15년이 39명(19.5%), 16~20년이 30명(15.0%), 21년이상 107명(53.5%) 등이다. 거주지별로는 동구가 12명(2%), 중구가 30명(15.0%), 서구가 91명(45.5%), 유성구 55명(27.5%), 대덕구 5명(2.5%), 기타가 7명

(3.5%) 등이 참여하였다. 출생지별로는 대전지역이 75명(36.5%), 충청지역이 93명(46.5%), 호남지역이 9명(4.5%), 영남지역이 14명(7.0%), 수도권이 10명(5.0%), 기타가 1명(0.5) 등이다(〈표 3-1〉 참조).

〈표 3-1〉 응답자의 개인별 특성

일반시민				공무원			
구 분		빈도(명)	비율(%)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41	46.7	성별	남성	133	66.5
	여성	161	53.3		여성	67	33.5
연령	20대	65	21.5	연령	20대	8	4.0
	30대	56	18.5		30대	24	12.0
	40대	75	24.8		40대	75	37.5
	50대	66	21.9		50대	92	46.0
	60세 이상	40	13.2		60세 이상	1	0.5
학력	초졸이하	4	1.3	직급	4급	2	1.0
	중졸	27	8.9		5급	37	18.5
	고졸	44	14.6		6급	81	40.5
	전문대졸	93	30.8		7급	67	33.5
	대졸이상	134	44.4		8급	6	3.0
거주지	동구	17	5.6	경력	2년이하	11	5.5
	중구	11	3.6		3~5년	3	1.5
	서구	116	38.4		6~10년	10	5.0
	유성구	64	21.2		11~15년	39	19.5
	대덕구	94	31.1		16~20년	30	15.0
					21년이상	107	53.5
출생지	대전지역	95	31.5	거주지	동구	12	6.0
	충청지역	108	35.8		중구	30	15.0
	호남지역	30	9.9		서구	91	45.5
	영남지역	29	9.6		유성구	55	27.5
	수도권	40	13.2		대덕구	5	2.5
					기타	7	3.5
합계		302	100.0	출생지	대전지역	73	36.5
					충청지역	93	46.5
					호남지역	9	4.5
					영남지역	14	7.0
					수도권	10	5.0
					기타	1	0.5
				합계		200	100.0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일반적 인식

1) 저출산·고령화의 영향 체감도

일상생활 속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체감하고 있지 못한 응답자보다 체감하고 있는 응답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시민의 응답자는 302명 중 205명(36.9%)이, 시청공무원 응답자 200명 중 183명(91.5%)이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표 3-2> 저출산·고령사회의 영향력 체감도

구 분	총 합		일반시민		공무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아주 많이 체감하고 있다	177	35.3	106	35.1	71	35.5
② 체감하는 정도다	211	42.0	99	32.8	112	56.0
③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	78	15.5	62	20.5	16	8.0
④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	36	7.2	35	11.6	1	0.5
합계	502	100.0	302	100.0	200	100.0

2)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미래사회의 심각한 위협요인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미래사회의 심각한 위협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노동력 부족국가로의 전환’이라는 응답이 37.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악화’가 30.9%, ‘노동력 고령화 급속 진행’ 및 ‘사회보장비 증가’ 등이 각각 28.4% 및 28.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병력자원의 부족(4.8%),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교육의 공급과잉(5.1%) 등은 저출산·고령화의 가속으로 인한 미래사회에 있어서 그리 심각한 위협요인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시민의 응답자는 저출산·고령화의 가속으로 인한 미래사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노동력 부족국가로의 전환(18.0%)’이라고 지적했으며, 시청

공무원 응답자는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악화(20.3%)’ 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가속으로 인한 미래사회의 심각한 위협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것은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악화(일반시민 10.6%, 공무원 20.3%)와 노후소득 불안정(일반시민 15.4%, 공무원 9.1%)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저출산·고령사회가 가져올 미래사회의 심각한 위협요인

구 분	총 합		일반시민		공무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노동력 부족 국가로의 전환	257	51.2	147	18.0	110	19.6
② 노동력 고령화 급속 진행	197	39.2	120	14.7	77	13.7
③ 숙련노동력 감소로 노동생산성 저하	68	13.5	47	5.7	21	3.7
④ 잠재 성장률 하락	148	29.5	69	8.4	79	14.1
⑤ 사회보장비 증가	191	38.0	102	12.5	89	15.8
⑥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악화	201	40.0	87	10.6	114	20.3
⑦ 노후소득 불안정	177	35.3	126	15.4	51	9.1
⑧ 학생수의 감소로 교육의 공급과잉	39	7.8	34	4.2	5	0.9
⑨ 병력자원의 부족	36	7.2	28	3.4	8	1.4
⑩ 농촌지역의 쇠퇴	66	13.1	58	7.1	8	1.4
합계	502	274.9	818	100	562	100.0

3) 과거 10년간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 인식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423명(84.2%)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과거 10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반시민 응답자와 공무원 응답자 사이에 큰 차이는 없지만, 공무원 응답자가 일반시민 응답자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과거 10년간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 인식

구 분	총 합		일반시민		공무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매우 그렇다	3	0.6	2	0.7	1	0.5
② 그렇다	76	15.1	47	15.6	29	14.5
③ 그렇지 않다	319	63.5	184	60.9	135	67.5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04	20.7	69	22.8	35	17.5
합계	502	100.0	302	100.0	200	100.0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302명(60.1%)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인지도에 있어서는 일반시민 응답자와 공무원 응답자 사이에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하여 일반시민 응답자는 34.5%만이 인지하고 있고, 공무원 응답자의 경우는 52.0%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인지도

구 분	총 합		일반시민		공무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매우 그렇다	16	3.2	6	2.0	10	5.0
② 아는 정도다	184	36.7	98	32.5	86	43.0
③ 모른다	231	46.0	144	47.7	87	43.5
④ 전혀 모른다	71	14.1	54	17.9	17	8.5
합계	502	100.0	302	100.0	200	100.0

5) 향후 10년 이내의 출산율 회복 전망

향후 10년 이내에 출산율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대부분인 449명(89.4%)이 출산율회복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시민 응답자와 공무원 응답자 사이에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 10년간 출산율의 회복과 관련하여 일반시민의 응답자(긍정적 회복 전망 12.9%)는 공무원 응답자(긍정적 회복 전망 7.0%)에 비해서 다소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향후 10년 이내 출산율 회복 전망

구 분	총 합		일반시민		공무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매우 그렇다	2	0.4	1	0.3	1	0.5
② 그렇다	51	10.2	38	12.6	13	6.5
③ 그렇지 않다	325	64.7	191	63.2	134	67.0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24	24.7	72	23.8	52	26.0
합계	502	100.0	302	100.0	200	100.0

6) 결혼 후 원하는 자녀수

본인 또는 자녀가 결혼할 경우 부부가 몇 명의 아이를 낳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27명(5.4%)은 무자녀(0명), 88명(17.5%)은 1명, 294명(58.6%)은 2명으로 가장 많고, 81명(16.4%)은 3명, 12명(2.4%)은 4명 이상 아이 낳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시민 응답자와 공무원 응답자 사이에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시민 응답자보다는 공무원 응답자가 원하는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시민 응답자의 경우 1명의 자녀를 원하는 비율이 22.5%인데 비하여 공무원 응답자는 10.0%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시민 응답자의 경우 2명의 자녀를 원하는 비율이 50.0%인데 비하여 공무원 응답자는 7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결혼 후 원하는 자녀수

구 분	총 합		일반시민		공무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0명	27	5.4	19	6.3	8	4.0
② 1명	88	17.5	68	22.5	20	10.0
③ 2명	294	58.6	151	50.0	143	71.5
④ 3명	81	16.1	53	17.5	28	14.0
⑤ 4명 이상	12	2.4	11	3.6	1	0.5
합계	502	100.0	302	100.0	200	100.0

7) 은퇴 후의 만족한 삶에 대한 기대

은퇴(만65세 이후) 후에 만족한 삶을 살아갈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절반 이상인 276명(55.0%)이 은퇴 후에 만족한 삶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시민 응답자와 공무원 응답자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데, 일반시민 응답자(46.7%)는 공무원 응답자(42.5%)에 비해 은퇴(만65세) 후 만족한 삶에 대한 기대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은퇴 후의 만족한 삶에 대한 기대

구 분	총 합		일반시민		공무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매우 그렇다	33	6.6	29	9.6	4	2.0
② 그렇다	193	38.4	112	37.1	81	40.5
③ 그렇지 않다	238	47.4	130	43.0	108	54.0
④ 전혀 그렇지 않다	38	7.6	31	10.3	7	3.5
합계	502	100.0	302	100.0	200	100.0

8) 은퇴 후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의지

은퇴(만65세 이후) 후에 사회적 활동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165명(32.9%)은 재취업, 158명(31.5%)은 봉사활동, 142명(28.3%)은 귀농·귀촌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냥 쉬고 싶다는 의견도 6.2%(31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 취미·여가, 종교·시민단체, 창업 등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시민 응답자는 재취업이 32.5%, 귀농·귀촌이 32.1%, 봉사활동이 31.1% 등으로 나타나 큰 차이 없이 고른 응답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공무원 응답자는 재취업이 33.5%, 귀농·귀촌이 22.5%, 봉사활동이 32.0% 등으로 나타나 귀농·귀촌의 사회적 활동을 덜 선호하고 있으며, 그냥 쉬고 싶다는 응답도 10.0%(20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은퇴 후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의지

구 분	총 합		일반시민		공무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재취업	165	32.9	98	32.5	67	33.5
② 귀농·귀촌	142	28.3	97	32.1	45	22.5
③ 봉사활동	158	31.5	94	31.1	64	32.0
④ 기타	37	7.4	13	4.2	24	12.0
합계	502	100	302	100	200	100.0

9)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급한 대책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중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대책이 212명(42.2%),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 개혁이 126명(25.1%),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가 114명(22.7%), 난임 등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가 47명(9.4%)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사회양극화·불평등 해소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급한 대책으로서 일반시민 응답자 및 공무원 응답자 모두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대책(일반시민 43.7%, 공무원 40.0%)을 지적하고 있으나, 다음 순위에서 일반시민 응답자의 경우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24.8%)가, 공무원 응답자는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 개혁(34.5%)이 각각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이 특징적이다.

〈표 3-10〉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급한 대책

구 분	중 합		일반시민		공무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청년 일자리 및 주거대책	212	42.2	132	43.7	80	40.0
② 난임 등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47	9.4	37	12.3	10	5.0
③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 개혁	126	25.1	57	18.9	69	34.5
④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114	22.7	75	24.8	39	19.5
⑤ 기타	3	0.6	1	0.3	2	1.0
합계	502	100.0	302	100	200	100.0

10) 고령사회에 대한 시급한 대책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중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생활 보호가 228명(45.4%),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167명(33.3%),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이 75명(14.9%),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가 32명(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중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시민 응답자 및 공무원 응답자 모두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생활보호를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은 같으나, 노후소득보장에 대해서는 일반시민이 37.4%(113명) 응답한 반면, 공무원은 27.0%(54명)가 응답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에서도 일반시민은 10.3%(31명)가, 공무원은 22.0%(44명)이 응답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표 3-11〉 고령사회에 대한 시급한 대책

구 분	중 합		일반시민		공무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노후소득보장 강화	113	37.4	113	37.4	54	27.0
②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생활 보호	137	45.4	137	45.4	91	45.5
③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21	7.0	21	7.0	11	5.5
④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31	10.3	31	10.3	44	22.0
⑤ 기타	0	0.0	0	0.0	0	0.0
합계	502	100	302	100	200	100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대전시)의 역할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관(단체) 역할의 중요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어떤 기관(단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구청을 포함한 대전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282명(56.2%), 다음으로 공공기관이 88명(17.5%)이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종교단체의 역할(0.4%)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응답이 3.6%나 있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은 일반시민이나 공무원 모두 공통되나, 일반시민의 응답비율(62.3%)이 공무원의 응답비율(47.0%)이 높게 나타났으며,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공무원(9.5%)이 일반시민(4.6%)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표 3-12>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관(단체)의 역할 중요도

구 분	종합		일반시민		공무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대전시청(구청포함)	282	56.2	188	62.3	94	47.0
② 대전교육청	35	7.0	19	6.3	16	8.0
③ 공공기관	88	17.5	54	17.9	34	17.0
④ 지역 산업체	44	8.8	21	7.0	23	11.5
⑤ 시민사회단체	33	6.6	14	4.6	19	9.5
⑥ 종교단체	2	0.4	2	0.7	0	0.0
⑦ 기타	18	3.6	4	1.3	14	7.0
합계	502	100.0	302	100.0	200	100.0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전시의 시책에 대한 인지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대전시가 추진한 시책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425명(84.7%)이 없다고 응답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전시의 시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시민 응답자(7.0%)가 공무원 응답자(28.0%)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대전시 추진한 시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적어 달자는 질문에 대해 공무원 응답자는 출산우대정책(출산장려금, 17명), 미혼남녀 맞선 프로그램(12명), 양육비·보육비(11명), 다자녀우대 정책(다자녀우대카드, 7명), 다자녀우대 정책(3명), 아이돌봄 서비스(3명), 난임 시술 지원(3명), 출산우대정책(출산선물, 2명), 유연근무제(1명), 보육시설 확대(1명), 출산우대정책(1명), 일과가정의 양립문화 조성(1명), 인구정책 담당 부서 신설(1명), 인구교육(1명), 육아휴직(1명), 월드킵경기장 내 육아지원센터(1명), 여성취업사업(1명), 아이사랑카드(1명), 산모도우미(1명), 다자녀우대 정책(다자녀 아파트 분양 우대, 1명), 다자녀우대 정책(다자녀 낳기 운동 1명), 다자녀우대 정책(다자녀 교통비 면제, 1명) 등을 적시했다.

일반시민 응답자는 출산우대정책(출산장려금, 13명), 양육비·보육비(6명), 출산우대정책(임신보조금카드, 3명), 미혼남녀 맞선 프로그램(1명), 다자녀우대 정책(1명), 출산우대정책(출산선물, 1명), 유연근무제(1명), 보육시설 확대(1명) 등을 적시했다.

<표 3-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전시의 시책

구 분	총 합		일반시민		공무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있다	77	15.3	21	7.0	56	28.0
② 없다	425	84.7	281	93.0	144	72.0
합계	502	100.0	302	100.0	200	100.0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전시의 시급한 과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대전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200명(39.8%)이 ‘소요자원 확보’ 라고

응답했고, 114명(22.7%)이 ‘출산율 장려를 위한 시민운동 지원’, 100명(19.9%)이 ‘출산율 장려를 위한 홍보 강화’, 72명(14.3%)이 ‘대전시 전담조직의 기능 확대’라고 응답했다. 출산율 극복을 위해서 대전시는 우선적으로 소요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응답비율에 있어서는 공무원(50.0%)이 일반시민(33.1%)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또한, 기타 응답으로 공무원은 제도 및 법규정비, 사회시스템 정비, 청년일자리(양질의) 창출 그래야 결혼 가능,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일·가정 양립 정책 실질적 추진, 정부의 교육방향 대책마련 건의, 조직문화변화, 청년일자리(양질의) 창출 그래야 결혼 가능, 교육비 전액지원, 출산율 장려보다 실질적인 경제혜택 부여 등을 제시해 주었다. 일반시민 응답자는 제도 및 법규정비, 사회시스템 정비, 세자녀 무상지원(교육), 출산장려금 확대 등을 제시해 주었다.

<표 3-14> 저출산 극복을 위해 대전시의 시급한 과제

구 분	중 합		일반시민		공무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소요재원 확보	200	39.8	100	33.1	100	50.0
② 대전시 전담조직의 기능 확대	72	14.3	51	16.9	21	10.5
③ 출산율 장려를 위한 시민운동 지원	114	22.7	78	25.8	36	18.0
④ 출산율 장려를 위한 홍보 강화	100	19.9	70	23.2	30	15.0
⑤ 기타	16	3.2	3	1.0	13	6.5
합계	502	100.0	302	100	200	100

4)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전시의 적합한 시책

저출산 극복을 위해 대전시가 추진하기 가장 적합한 시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181명(36.1%)이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대책 수립’라고 응답했고, 155명(30.9%)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

120명(23.9%)이 ‘양질의 보육시설 확대’ 라고 응답했다. 출산율 극복을 위해서 대전시가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책에 대하여 일반시민 응답자는 청년일자리 및 주거대책 수립(38.1%)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선택했으며, 공무원 응답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36.5%)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선택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써 공무원 응답자는 교육비 과다지출 사회시스템 개선, 다자녀 등에 획기적인 경제지원, 세금혜택, 주거공급, 교육비 대학까지 전액지원 등을 제안했으며, 일반시민 응답자는 교육비 전액지원 등의 시책이 적합하고 제시해 주었다.

〈표 3-15〉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합한 대전시의 과제

구 분	총 합		일반시민		공무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청년 일자리 및 주거대책 수립	181	36.1	115	38.1	66	33.0
② 난임 등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43	8.6	33	10.9	10	5.0
③ 양질의 보육시설 확대	120	23.9	71	23.5	49	24.5
④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	155	30.9	82	27.2	73	36.5
⑤ 기타	3	0.6	1	0.3	2	1
합계	502	100	302	100	200	100

5) 향후 10년간 대전시의 인구 증감에 대한 견해

향후 10년간 대전지역의 인구증감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315명(62.7%)이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응답했고, 116명(23.1%)이 ‘인구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으며, 71명(14.1%)만이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응답했다. 향후 10년간 대전시의 인구증가에 대해서 일반시민 응답자가 공무원 응답자에 비해서 인구증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향후 10년간 대전시의 인구 증감에 대한 견해

구 분	총 합		일반시민		공무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71	14.1	51	16.9	20	10.0
② 인구 변화가 없을 것이다	116	23.1	83	27.5	33	16.5
③ 인구가 줄어든 것이다	315	62.7	168	55.6	147	73.5
합계	502	100.0	302	100.0	200	100.0

6) 향후 10년간 대전시의 인구 유출입에 대한 견해

향후 10년간 대전지역의 인구 유출입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236명(47.0%)이 ‘인구유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응답했고, 195명(33.8%)이 ‘인구유출입이 같을 것이다’ 라고 했으며, 71명(14.1%)만이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응답했다. 향후 10년간 대전시의 인구유출입에 대해서 일반시민 응답자가 공무원 응답자에 비해서 인구유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향후 10년간 대전시의 인구 유출입에 대한 견해

구 분	총 합		일반시민		공무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이다	71	14.1	52	17.2	19	9.5
② 인구 유출입이 같을 것이다	195	38.8	126	41.7	69	34.5
③ 인구유출이 증가할 것이다	236	47.0	124	41.1	112	56.0
합계	502	100.0	302	100.0	200	100.0

3. 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대전시)의 역할

1) 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한 기관(단체) 역할의 중요도

고령화 사회에 대응을 위해 어떤 기관(단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구청을 포함한 대전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299명(59.6%), 다음으로 공공기관이 94명(18.7%)이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종교단체의 역할(0.2%)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응답도 2.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반시민의 응답자(62.6%)가 공무원 응답자(55.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한 지역 산업체의 역할에 대해 일반시민 응답자는 7.6%, 공무원 응답자는 10.0%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시민 응답자 5.0%, 공무원 응답자 8.5%가 시민사회단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의견으로서 고령 사회에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일반시민은 2.8%, 공무원 응답자는 5.0% 등을 지적하고 있다.

<표 3-18> 고령화에 대응하는 있어서 기관(단체)의 역할 중요도

구 분	총 합		일반시민		공무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대전시청(구청포함)	299	59.6	189	62.6	110	55.0
② 대전교육청	19	3.8	14	4.6	5	2.5
③ 공공기관	94	18.7	56	18.5	38	19.0
④ 지역 산업체	43	8.6	23	7.6	20	10.0
⑤ 시민사회단체	32	6.4	15	5.0	17	8.5
⑥ 종교단체	1	0.2	1	0.3	0	0.0
⑦ 기타	14	2.8	4	1.3	10	5.0
합계	502	100.0	302	100	200	100.0

2) 고령사회에 대응 하는데 있어서 대전시의 시책 인지도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대전시가 추진한 시책 중 기억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450명(89.6%)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52명(10.4%) 만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전시에서 추진한 고령사회 대응 시책에 대한 인지도는 일반시민 응답자가 4.3%인데 비해서 공무원 응답자는 1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시민은 노령연금(4명), 교통비지원(4명), 일자리 정책(일자리 박람회, 3명), 일자리 정책(2명), 예방접종 무료(2명), 100세 축하금(1명), 경로당 운영지원·활성화(경로당 건강 프로그램, 1명), 대전 실버산업(1명) 등의 시책이 기억난다고 했다.

공무원 응답자는 일자리 정책(18명), 노령연금(6명), 일자리 정책(일자리 박람회, 3명), 인생이모작 지원센터(3명), 경로당 운영지원·활성화(2명), 교통비지원(1명), 꿈나무지킴이(1명), 노인돌보미(1명), 노인복지시설 확대(1명), 노인여가시설 확충(1명), 일자리 정책(사회적 기업 실버 취업, 1명), 일자리 정책(은퇴자 사회활동 발굴, 1명), 일자리 정책(퇴직과학자 인재 활용, 1명), 일자리 정책(퇴직자 재취업 역량 강화, 1명), 치매예방(1명), 효문화 진흥회 추진(1명) 등이 기억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3-19>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시의 시책

구 분	종 합		일반시민		공무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있다	52	10.4	13	4.3	39	19.5
② 없다	450	89.6	289	95.7	161	80.5
합계	502	100.0	302	100.0	200	100.0

3) 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해 대전시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대전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180명(35.9%)이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및 지원’, 136명(27.1%)이 ‘소요재원 확보’, 120명(23.9%)이 ‘고령친화적 도시기반 시설 확충’,

그리고 66명(13.1%)이 ‘대전시 전담조직의 기능 확대’ 라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모두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이 대전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으나, 일반시(32.1%)에 비해서 공무원(41.5%)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시민은 2순위로 고령친화적 도시기반 시설확충(27.8%)을 지적했으나, 공무원을 소요재원의 확보(32.0%)를 중요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3-20>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시의 시급한 과제

구 분	총 합		일반시민		공무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소요재원 확보	136	27.1	72	23.8	64	32.0
② 대전시 전담조직의 기능 확대	66	13.1	49	16.2	17	8.5
③ 고령친화적 도시기반 시설 확충	120	23.9	84	27.8	36	18.0
④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및 지원	180	35.9	97	32.1	83	41.5
⑤ 기타	0	0.0	0	0.0	0	0.0
합계	502	100	302	100	200	100

4) 고령화에 대응을 위한 대전시의 적합한 시책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시가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256명(51.0%)이 ‘노인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적 기업 및 육성 지원’ 이라고 응답했고, 100명(19.9%)이 ‘노인 재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비 지원’ 에, 85명(16.9%)이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이라고 응답했다.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시가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책에 대해 우선 순위에 있어서 일반시민 응답자는 ‘노인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47.0%)’, ‘노인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26.5%)’, ‘고령친화산업의 육

성(12.6%)’, ‘은퇴과학자의 사회(봉사)활동 영역의 발굴 및 정보 제공(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응답자는 ‘노인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57.0%)’, ‘고령친화산업의 육성(23.5%)’, ‘노인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10.0%)’, ‘은퇴과학자의 사회(봉사)활동 영역의 발굴 및 정보 제공(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 집단 모두에서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등 운영지원 확대’는 최하위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표 3-21> 고령화에 대응을 위한 적합한 대전시의 과제

구 분	종 합		일반시민		공무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노인 재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비 지원	100	19.9	80	26.5	20	10.0
② 노인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256	51.0	142	47.0	114	57.0
③ 은퇴과학자의 사회(봉사)활동 영역의 발굴 및 정보 제공	33	6.6	22	7.3	11	5.5
④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85	16.9	38	12.6	47	23.5
⑤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등 운영 지원 확대	26	5.2	20	6.6	6	3.0
⑥ 기타	2	0.4	0	0.0	2	1.0
합계	502	100	302	100	200	100.0

5) 대전지역에서의 고령인구 생활환경 인식

대전지역이 타 도시에 비해서 고령인구가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341명(67.9%)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32.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별로는 공무원 응답자(76.0%)가 일반시민 응답자(62.6%)보다 대전지역이 타 도시보다 고령인구가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 대전지역에서의 고령인구 생활환경 인식

구 분	총 합		일반시민		공무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① 매우 그렇다	20	4.0	12	4.0	8	4.0
② 그런 편이다	321	63.9	177	58.6	144	72.0
③ 그렇지 않다	147	29.3	100	33.1	47	23.5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4	2.8	13	4.3	1	0.5
합계	502	100	302	100	200	100.0

제3절 분석결과의 종합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총 502명(일반시민 302명, 시청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3개(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전시의 역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대전시의 역할) 부문에 대해 설문조사와 단순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① 일상생활 속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체감하고 있지 못한 응답자보다 체감하고 있는 응답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미래사회의 심각한 위협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노동력 부족국가로의 전환’이라는 응답이 37.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악화’가 30.9%, ‘노동력 고령화 급속 진행’ 및 ‘사회보장비 증가’ 등이 각각 28.4% 및 28.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병력자원의 부족(4.8%),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교육의 공급과잉(5.1%) 등은 저출산·고령화의 가속으로 인한 미래사회에 있어서 그리 심각한 위협요인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423명(84.2%)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과거 10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④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302명(60.1%)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향후 10년 이내에 출산율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대부분인 449명(89.4%)이 출산율회복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본인 또는 자녀가 결혼할 경우 부부가 몇 명의 아이를 낳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27명(5.4%)은 무자녀(0명), 88명(17.5%)은 1명, 294명(58.6%)은 2명으로 가장 많고, 81명(16.4%)은 3명, 12명(2.4%)은 4명 이상 아이 낳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 은퇴(만65세 이후) 후에 만족한 삶을 살아갈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절반 이상인 276명(55.0%)이 은퇴 후에 만족한 삶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⑧ 은퇴(만65세 이후) 후에 사회적 활동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165명(32.9%)은 재취업, 158명(31.5%)은 봉사활동, 142명(28.3%)은 귀농·귀촌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냥 쉬고 싶다는 의견도 6.2%(31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 취미·여가, 종교·시민단체, 창업 등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중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대책이 212명(42.2%),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 개혁이 126명(25.1%),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가 114명(22.7%), 난임 등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가 47명(9.4%)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사회양극화·불평등 해소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⑩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중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생활 보호가 228명(45.4%),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167명(33.3%),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이 75명(14.9%),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가 32명(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전시의 역할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어떤 기관(단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구청을 포함한 대전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

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282명(56.2%), 다음으로 공공기관이 88명(17.5%)이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종교단체의 역할(0.4%)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응답이 3.6%나 있었다. ② 저출산 극복을 위해 대전시가 추진한 시책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425명(84.7%)이 없다고 응답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전시의 시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저출산 극복을 위해 대전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200명(39.8%)이 ‘소요자원 확보’라고 응답했고, 114명(22.7%)이 ‘출산을 장려를 위한 시민운동 지원’, 100명(19.9%)이 ‘출산을 장려를 위한 홍보 강화’, 72명(14.3%)이 ‘대전시 전담조직의 기능 확대’라고 응답했다. ④ 저출산 극복을 위해 대전시가 추진하기 가장 적합한 시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181명(36.1%)이 ‘청년 일자리 및 주거대책 수립’라고 응답했고, 155명(30.9%)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 120명(23.9%)이 ‘양질의 보육시설 확대’라고 응답했다. ⑤ 향후 10년간 대전지역의 인구증감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315명(62.7%)이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응답했고, 116명(23.1%)이 ‘인구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으며, 71명(14.1%)만이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⑥ 향후 10년간 대전지역의 인구 유출입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236명(47.0%)이 ‘인구유출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응답했고, 195명(33.8%)이 ‘인구유출입이 같을 것이다’라고 했으며, 71명(14.1%)만이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셋째,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대전시의 역할 대한 인식은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① 고령화 사회에 대응을 위해 어떤 기관(단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구청을 포함한 대전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299명(59.6%), 다음으로 공공기관이 94명(18.7%)이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종교단체의 역할(0.2%)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응답도 2.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대

전시가 추진한 시책 중 기억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450명(89.6%)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52명(10.4%) 만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전시에서 추진한 고령사회 대응 시책에 대한 인지도는 일반시민 응답자가 4.3%인데 비해서 공무원 응답자는 19.5%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대전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180명(35.9%)이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및 지원’, 136명(27.1%)이 ‘소요자원 확보’, 120명(23.9%)이 ‘고령친화적 도시기반 시설 확충’, 그리고 66명(13.1%)이 ‘대전시 전담조직의 기능 확대’ 라고 응답했다. ④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시가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256명(51.0%)이 ‘노인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적 기업 및 육성 지원’ 이라고 응답했고, 100명(19.9%)이 ‘노인 재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비 지원’ 에, 85명(16.9%)이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이라고 응답했다. ⑤ 대전지역이 타 도시에 비해서 고령인구가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02명 중 341명(67.9%)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32.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1절 법규의 정비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1절 법규의 정비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관련된 법규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고령사회의 대응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법규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의 목적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기본이념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법에 의하면,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①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고, ②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책무에 대하여도 규정해 놓고 있다.

저출산 극복과 관련된 독립적인 정부의 법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다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장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5개의 조항이 있을 뿐이다. 동법에 의한 저출산 대책은 ① 인구정책, ② 인구교육, ③ 자녀의 출산과 보육, ④ 모자보건의 증진, ⑤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에 관하여 규정해 놓고 있다.⁶⁾

6)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

반면, 고령사회정책과 관련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① 고용과 소득보장, ② 국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③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④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⑤ 평생교육과 정보화, ⑥ 노후설계, ⑦ 취약계층노인 등, ⑧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⑨ 경제와 산업 등, ⑩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등 10개의 조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고령사회정책과 관련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규정과는 별도로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②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관련된 시·도의 자치법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관련된 시도의 자치법규는 ①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②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③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④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검색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등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도가 시행하는 저출산 및 고령화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자치법규에는 ① 시도자치단체의 책무(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구교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 ② 시도민의 책무(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시도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 ③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④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 시도의 자치법규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표 4-1>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시도의 자치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조례 -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 조례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반면, 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시도의 자치법규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고령농업인 지원조례(충남, 경북, 경남, 제주도, 광역주광역시, 경기도 등),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등이 있다.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대전광역시의 법규정비 방안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도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도는 동 조례를 통하여 매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전광역시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 조례에는 전라북도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① 목적, ② 시 및 시민의 책무, ③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④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⑤ 기업·단체등 지원(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행정적 지원), ⑥ 임신출산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고령자 고용과 소득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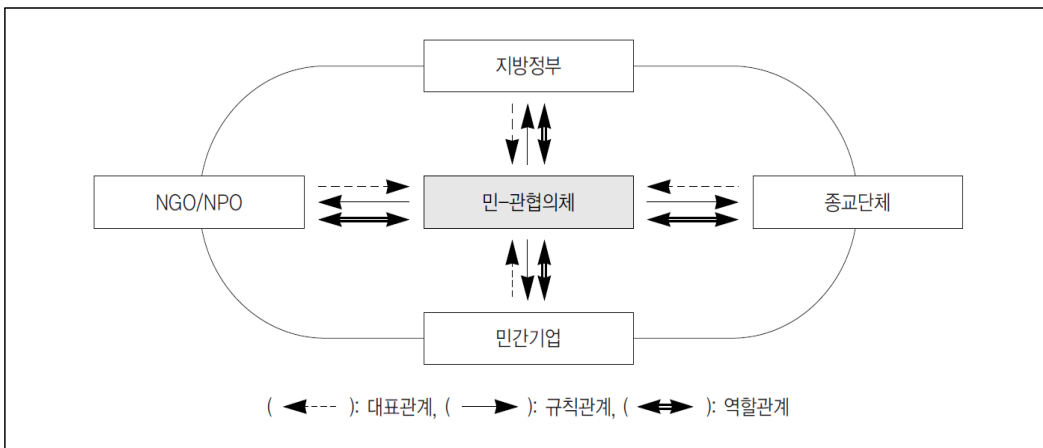
1.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모형 설계

앞서 논의한 문헌고찰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의 작동모형을 설계해 보면 <그림 4-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거버넌스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정부부문,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그리고 민간기업 등 다양한 행위 주체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것과 같이 저출산·고령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

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4-1>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모형은 지역단위의 주요한 행위주체인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NGO/NPO), 민간기업, 그리고 종교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해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최길수·한형서, 2011: 207).

거버넌스를 위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각의 행위주체(단체)들은 거버넌스체계에 참여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논의할 전문가 또는 대표자를 협의체에 참여시킨다. 거버넌스체계는 각 참여단체 및 대표자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해 놓은 각종의 규칙들을 제안한다. 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상호의존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 물자,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각 행위주체의 활동영역에 따라 당해 거버넌스체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상호교환하여야 한다.

<그림 4-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모형



출처 : 최길수·한형서, 2011 : 208.

2. 거버넌스체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21세기에 들어와 정부의 시대가 거버넌스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말은 계층제에서 네트워크로 국정운영의 양식이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네트워크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는 것이다(최길수·한형서, 2011: 208, 재인용). 네트워크는 협력의 한유형으로 각각의 조직들이 조직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공유된 자원을 가지고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함께 결합하는 협력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는 행위자를 연결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행위자란 구체적으로 사람이나 조직 및 시스템을, 그리고 관계란 상호행동을 의미한다(최길수·한형서, 2011: 208, 재인용).

이와 같이,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논의 속에 발견되는 거버넌스의 핵심은 네트워크이다.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 거버넌스는 지역공동체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정부와 다른 조직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공동체 수준의 공사협력체와 네트워크 형성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최길수·한형서, 2011: 208, 재인용).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는 각계 각층의 네트워킹이 가능하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거버넌스 체계에 참여하는 대표성을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행위 주체를 몇 개(여기서는 정부 영역, 민간기업 영역, 시민사회단체 영역, 종교단체 영역)의 영역으로 범주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길수·한형서, 2011: 208).

3. 거버넌스체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앞의 논의한 바와 같이, 많은 시도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와 유사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조항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자치법규가 국가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가 가져올 제문제에 대해 민-관협치(거버넌스)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제도적 장치는 관련 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개정으로 다양한 민간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많은 지방정부의 관련 조례에서 기업·단체 등의 지원(단체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행·재정상 지원), 전문가의 포럼운영(단체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음)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민간·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

행력을 담보하기에는 불충분한 점이 많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속에 다양한 민간·사회단체들이 참여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의 규정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길수·한형서, 2011: 209).

제도적인 관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은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 시행계획은 모든 사업 내용 및 투자재원을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가 확정하고 부담하도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민간·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대응의 정책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의 최종 확정단계 이전에 민-관협의체(거버넌스)를 통한 심의 또는 회람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이규정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동 시행계획의 수립과정에 민간·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최길수·한형서, 2011: 209).

4. 참여집단의 역할 및 기능 정립

거버넌스는 정부, 민간·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이와 같이, 지역단위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역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행위주체들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림 4-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역거버넌스는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NGO/NPO), 민간기업, 종교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활동주체들은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 및 자원을 서로 교환함은 물론 활동의 일체화를 위한 공동규칙으로 서로를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활동주체들의 고유의 활동영역에 따라 전문성 및 역할과 기능이 특정화될 수 있다. 우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의 거버넌스에 참

여하는 지방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대전지역의 일반시민 및 시청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저출산극복 및 고령사회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기관(단체)이 지방자치단체(구청포함)라는 응답이 지배적으로 높게 나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지방정부는 동 거버넌스의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의 촉진자,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모색의 선도자, 네트워크의 관리자, 공동 목적 달성에 소요되는 운영재원의 부담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최길수·한형서, 2011: 210).

둘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역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NGO/NPO)는 저출산 극복 및 고령화의 대응에 관한 상담, 교육, 홍보, 정책평가, 현장투입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해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단체는 관련 정책의 구상과 정책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최길수·한형서, 2011: 210).

셋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은 아직까지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본격화 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은 지역의 상공회의소 등을 중심으로 고령자를 위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일자리 정보의 제공이나 재취업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직원들의 출산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 해소를 위한 내규의 제정과 출산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확충함으로써 민간기업은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기여하게 된다(최길수·한형서, 2011: 210).

넷째,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종교단체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종교단체들은 자원봉사의 형태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최길수·한형서, 2011: 210).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종교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리 높게 평가되고 있지 않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노인무료급식 및 자살예방사업’ 등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 거버넌스체계의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역거버넌스의 운영체계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들의 대표자들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떠한 기능을 할 것인가를 제도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최길수·한형서, 2011: 211).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앞서 지적한 조례를 통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 협의체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시행계획의 심의 및 모니터링을 통한 조정 및 지방정부가 집행한 정책에 대한 평가 등에 있어서 주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체의 기능적인 측면 외에도 협의체의 구성을 위한 대표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조직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규칙을 만드는 작업은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길수·한형서, 2011: 211).

거버넌스의 지원체계는 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사무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는 경우에도 어느 부서가 전담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은 사회복지 부서인 시·도의 국·실 중에서는 복지국 또는 여성가족국 등에서 나누어 담당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상이다(최길수·한형서, 2011: 211). 이와 관련하여 선우덕 외(2006: 155)의 연구에서 조직개편을 통하여 ‘저출산·고령화대책관리본부’를 설치하여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전담시키자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민-관협의체(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정부 내에 이 협의체를 지원하는 지원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최길수·한형서, 2011: 211). 그런데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부서는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 추진의 관점에서 볼 때, 지방정부의 거의 모든 부서가 관련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된 정책은 부서간, 사업간(프로그램), 그리고 재원배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체계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체장 직속으로 별도의 추진단을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장 결론 :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제5장 결론 :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의 적용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지역거버넌스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저출산·고령화의 현황, 저출산·고령화가 미치는 파급효과, 저출산·고령화의 전반적인 추세, 대전광역시의 시청 공무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설문조사·분석, 그리고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의 적용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지역거버넌스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일반시민 및 시청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연구방법을 설정하였다.

제2장 문헌고찰에서는 한국과 대전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 추이, 인구구조의 변화와 파급효과 및 그로 인한 도시문제,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화정책시행계획의 개요(수립배경 및 2016년 정책 방향, 2016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자체사업 소요예산), 고령사회에 대한 거버넌스적 대응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는데, 설문에는 일반시민 302명, 시청 공무원 200명이 참여하였다. 설문지는 구조화된 설문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일반적 인식(10문항),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대전시)의 역할(6문항), 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대전시)의 역할(5문항), 그리고 응답자의 특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우선 저출산·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시도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전광역시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정하여 매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①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모형 설계, ② 거버넌스체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③ 거버넌스체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④ 참여집단의 역할 및 기능 정립, ⑤ 거버넌스체계의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제2절 정책제언

저출산·고령사회 및 거버넌스에 관한 문헌고찰과 대전시 일반시민 및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시사점 등을 종합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시도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전광역시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정하여 매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자치법규에는 ① 목적, ② 시 및 시민의 책무, ③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④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⑤ 기업·단체등 지원(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행정적 지원), ⑥ 임신출산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고령자 고용과 소득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저출산·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을 단위로 활동하는 많은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체계(저출산·고령사회대응민·관협의회)를 구축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단위의 주요한 행위주체인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NGO/NPO), 민간기업, 그리고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와 행위주체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대표성, 역할, 규칙)를 설명하는 모형을 설정해야 한다. ② 저출산·고령사회가 가져올 제문제에 대해 민-관협치(거버넌스)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양한 민간·사회단체들이 참여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의 규정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③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체계에 참여하는 행위주체들은 공동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가 하면 활동배경에 따른 특수한 역할 및 기능이 정립되어야 한다. ④ 협의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의 추진단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성원(2010).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삼성경제연구소.
- 강은나(2016). 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2016.2, 29-37.
- 강은순(2008). 광역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경남발전연구원(2009a). 경남의 가족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 경남발전연구원(2009b).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경상남도 정책방향.
- 경제협력개발기구(2005). 한국의 고령화와 고용정책.
- 고승한(2015). 일본 가와사키시의 고령사회대응 정책과 시사점,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제244호: 3-15.
- 국회여성특별위원회(2001). 저출산시대의 여성정책, 국회여성특위 정책자료집 2001
- 국회예산정책처(2009).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정책 과제.
- 권태환(2002).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 기획예산처(2008). 시군구 유형별 민관협력체계 실태 및 발전모형에 관한 연구.
- 김민수(2016).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서강법률논총, 5(1): 129-153.
- 김민재(2009). 출산장려 및 고령화대응정책의 주요 선진국 동향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 김선자(2010). 서울의 저출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책리포트」, 1-18.
- 김수영·이민홍·손태홍(2015). 고령자 사회참여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3, 451-479.
- 김애경·박정우(2013).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3(4): 195-239.

- 김준영·안용비(2014). 일본 지자체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시사점, 「한국은행」.
- 김한구(2004). 고령자 고용촉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호균(2006). 정부의 역할과 거버넌스, 개방화시대, 정부의 역할과 시민사회의 발전전략, 제18차 포럼자료집, 한국NGO학회, 81-107.
- 대한민국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 박근수·김태일(2016).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가 부모부양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2): 468-479.
- 박승민(2016). 한국 정부의 고령친화사업 활성화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2016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겸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1-49.
- 박영삼(2016). 한눈에 보는 사회상 2016, 한계레, 2016년 10월 21일.
- 박이택(2012).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광역권 인구이동, 「아세아연구」, 55(2): 168-200.
- 박종서(2016).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 지속발전 가능성 강화전략, 보건복지포럼, 18-28.
- 선명순(2007). 효율적 지역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활성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선우덕·김상철·임주연(2006).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 송태민·이중순(2010).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통계 서비스 현황,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65호 : 106-117.
- 송태민·이중순(2010).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현황과 대책,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69호: 100-116.
- 신윤정(2009). 일본의 “새로운 저출산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제149호: 104-115.
- 오영희·김경래·유혜영(2008).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한국보

- 건사회연구원.
- 월드리서치(2008). 저출산·고령화 관련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 유영성·임영광(2012).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구조 분석 및 정책방안, 정책연구, 2012.11, 1-155.
- 유영성·임영광(2012).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구조 분석 및 정책방안, 「정책연구」, 제39권 : 1-155.
- 유재국(2015). 균형 인구 산정과 정책적 함의, NARS 현안보고서, 제285호: 1-49.
- 유진성(2016). 고령화 시대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고용률 수준 추정, 한국경제연구원.
- 유해숙(2004). 지역복지운동의 거버넌스유형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동희(2016). 청년층과 고령층의 서비스업 일자리 현황과 시사점, 월간 KIET산업경제, 제212호: 21-34.
- 이만우(2016). OECD 사회통합지표 분석 및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제62호.
- 이명환(2003). 독일의 유아교육기관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
- 이복수(2009).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과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7(2): 225-241.
- 이부형(2016). 일본 고령자 일자리 창출 사례와 시사점, VIP 리포트, 통권 660호: 1-21.
- 이삼식·윤홍식(2008).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수곤·최원삼·전영평(2005). 지역혁신거버넌스의 실증적 분석: 포항시사례, 한국행정학보, 39(4): 39-62.
- 이용호(2008).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247-265.
- 정성호(2012).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35(1): 31-52.
- 정인환·김택(2010). 한국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가치관 정립과 지방정부 정책연구, 도시행정학보, 23(3): 3-29.

- 조용준(2016). [시니어 컬럼]우리는 고령사회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건축, 60(6): 66-67.
- 조창현·한형서·임중현·최길수(20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구축 방안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2010-7호: 1-40.
- 차홍봉(2015).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정책. 보건복지포럼, 2015.5, 2-4.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2015). [긴급좌담회]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진단, 토론회자료집, 2015.12.18.
- 최길수(2014). 인구구조의 변화와 도시거버넌스의 구축, 대전발전포럼, 제48호, 39-57.
- 최길수·한형서(2011). 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GRI연구논총, 13(1), 189-217.
- 최길수·허철행(2016). 지방정부의 고령화문제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2016년도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431-449.
- 최성일 외 3인(2009).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경기도 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최승철·김규현(2012).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방향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3(1): 513-521.
- 최종암(2008). 저출산·고령사회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현대경제연구원(2016). 일본 고령자 일자리 창출 사례와 시사점,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홍종득(2007). 로컬 거버넌스구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남희(2016). 한·중·일 고령친화산업의 정책현황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제233호: 101-113.
- 황일봉(2005). 지방거버넌스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 네트워크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국외문헌〉

- Aguilera Ruth V. and Alvaro Cuervo-Cazurra.(2009). Codes of Good Governance, *Corporate Governance*, 17(3): 376-387.
- Andrew, Simon and Richard C. Feiock(2010). Core-Peripheral Structure and Regional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May/June, 494-499.
- Andrews, Matt.(2008). The Good Governance Agenda: Beyond Indicators without Theory, *Oxford Development Studies*, 36(4): 379-407.
- Bang, Henrik and Anders Esmark.(2009). Good Governance in Network Society: Reconfiguring the Political from Politics to Policy, *Administrative Theory & Praxis*, 31(1): 7-37.
- Bertilli, Anthony(2006). The Role of Political Ideology in the Structural Design of New Governance Agenci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July/August, 583-595.
- Bevir, Mark.(2006). Democratic Governance: System and Radical Perspectiv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May/June, 426-436.
- Bingham, Lisa Blomgren, Tina Nabatchi and Rosemary O’Leary.(2005). The New Governance: Practices and Processes for Stakeholder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Work of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5(5): 547-558.
- Bovaird, Tony and Elke Loeffler.(2007). Assessing the Quality of Local Governance: A Case Study of Public Services, *Journal Compilation*, 293-300.
- Callahan, Richard.(2007). Governance: The Collision of Politics and Coope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March/April, 290-301.
- Chen, Bin, Terry L. Cooper and Rong Sun.(2009). Spontaneous or Constructed? Neighborhood Governance Reforms in Los Angeles and Shanghai, *Public*

- Administration Review*, December, 108-115.
- Cordon, Juan Antonio Fernandez.(2007). Fertility and Demographic Policies in the Southern Countries of EU, *Pharmaceutical Policy and Law*, 9: 51-66.
- Cuthill, Michael and John Fien.(2005). Capacity Building: Facilitating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ance, *Research & Evaluation*, 64(4): 63-80.
- Fung, Archon.(2006). Varieties of Participation in Complex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December, 66-75.
- Garrido, Luis J. and Miguel A. Malo.(2005). Postponement of Family Formation and Public Budget: Another Approach to Very Low Fertility in Spain, *Public Finance and Management*, 5(1): 152-177.
- Goodsell, Charles.(2006). A New for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July/August, 623-635.
- Guo, Chao.(2007). When Government Becomes the Principal Philanthropist: The Effects of Public Funding on Patterns of Nonprofit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May/June, 458-473.
- Jackson William A.(2006). Post-Fordism and Population Ageing,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Economics*, 20(4): 449-467.
- John, Peter.(2009). Can Citizen Governance Redress the Representative Bias of Political Particip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March/April, 494-530.
- Kune, Jan B.(2009). Population Ageing and the affluent Society: The Case of the Netherlands, *Pensions*, 14(4): 231-241.
- LeRoux, Kelly.(2009). Paternalistic of Participatory Governance? Examining Opportunities for Client Participation in Nonprofit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May/June, 504-517.
- Mazouz, Bachir and Benoit Tremblay.(2006). Toward a Postbureaucratic Model of Governance: How Institutional Commitment is Challenging Quebec's, *Public*

- Administration Review*, March/April, 263-273.
- McDonald, Peter.(2007). Time for Action: Public Policies to Revert Low Fertility, *Pharmaceutical Policy and Law*, 9: 237-243.
- Menon, Jayant and Anna Cassandra Melendez.(2009). Ageing Asia, *ASEAN Economic Bulletin*, 26(3): 293-305.
- Randall Wray, L.(2006). Social Security in an Aging Society, *Review of Political Economy*, 18(3): 391-411.
- Robinson, Julia E.(1998). The Role of the Independent Political Executive in State Governance: Stability in the Face of Chang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8(2): 119-128.
- Sarker, Abu Elias.(2008). Patron-Client Politics and Its Implications for Good Governance in Bangladesh,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31: 1416-1440.
- Soares, Rodrigo R.(2007). Fertility in “Post-Demographic Transition” Countries, *Pharmaceutical Policy and Law*, 9: 15-27.
- Thompson, Frank J.(2008). State and Local Governance Fifteen Years Later: Enduring and New Challeng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December, 8-19.
- United Nations.(2008). *Guidebook on Promoting Good Governance in Public-Private Partnerships*.
- Withers, Glenn.(2002). Population Ageing and the Role of Immigration, *The Australian Economic Review*, 35(1): 104-112.
- Ye, Lin.(2009). Regional Government and Governance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December, 116-121.
- Zattoni, Alessandro and Francesca Cuomo.(2008). Why Adopt Codes of Good Governance? A Comparison of Institutional and Efficiency Perspectives,

Journal Compilation, 16(1): 1-15.

Zhao, Yongfel and B. Guy Peters.(2009). The State of the State: Comparing Governance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December, 122-128.

<http://www.tagesschau.de/aktuell/meldungen/0,1185,OID5009090,00.html>

<http://www.bwl.tu-darmstadt.de/vwl3/neu2/team/teamdetail.php?name=ruerup>

<http://www.tagesschau.de/aktuell/meldungen/0,1185,OID5009548,00.html>

부 록

<부록 1> 설문지

<부록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부록 3>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부록 4>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조례

<부록 1>**“저출산·고령사회대응”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선진국에 비해 그 증가속도가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출산·고령화의 파급효과는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범국민적인 시급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부 및 민간을 포함한 사회 전부문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는 지역적인 관점에서 성장 및 발전에 직접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대응방안에 대한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를 내는 목적으로 사용될 뿐, 개인별 세부 응답 내용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며, 통계법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길수드림

※ 본 조사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 042-530-3517, 팩스: 042-530-3528, E-Mail: kschoi@djdi.re.kr)

해당란에 '√' 표 하시거나,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일반적 인식

1. 귀하께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고 있으십니까?
 - ① 아주 많이 체감하고 있다.
 - ② 체감하는 정도이다.
 - ③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
 - ④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

2. 귀하께서는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미래사회에 가져올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3개 까지 선택)
 - ① 노동력 부족 국가로의 전환
 - ② 노동력 고령화 급속 진행
 - ③ 숙련노동력 감소로 노동생산성 저하
 - ④ 잠재 성장률 하락
 - ⑤ 사회보장비 증가
 - ⑥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악화
 - ⑦ 노후소득 불안정
 - ⑧ 학생수의 감소로 교육의 공급과잉
 - ⑨ 병력자원의 부족
 - ⑩ 농촌지역의 쇠퇴
 - ⑪ 기타 _____

3. 귀하께서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4. 귀하께서는 정부가 매 3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아주 잘 안다 ② 아는 정도다 ③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5. 귀하께서는 향후 10년 이내에 출산율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6. 귀하께서는 본인 또는 자녀가 결혼 할 경우 부부가 몇 명의 아이를 낳기를 원하십니까?
① 0명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7. 귀하께서는 은퇴(만65세 이후) 후에 만족한 삶을 살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8. 귀하께서는 은퇴(만65세 이후) 후에 다음의 사회적 활동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재취업 ② 귀농·귀촌 ③ 봉사활동 ④ 기타 _____
9. 귀하께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의 대책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청년 일자리 및 주거대책 ② 난임 등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③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 개혁 ④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⑤ 기타 _____
10. 귀하께서는 다음의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노후소득보장 강화 ②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생활 보호
③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④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⑤ 기타 _____

II.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대전시)의 역할

11. 귀하께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음의 어떤 기관(단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전시청(구청포함) ② 대전교육청 ③ 공공기관 ④ 지역 산업체
⑤ 시민사회단체 ⑥ 종교단체 ⑦ 기타 _____

12. 귀하께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대전시가 추진한 시책 중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있다면: _____)
 ② 없다
13. 귀하께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대전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소요재원 확보 ② 대전시 전담조직의 기능 확대 ③ 출산을 장려를 위한 시민운동 지원
 ④ 출산을 장려를 위한 홍보 강화 ⑤ 기타 _____
14. 귀하께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대전시가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청년 일자리 및 주거대책 수립 ② 난임 등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③ 양질의 보육시설 확대 ④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
 ⑤ 기타 _____
15. 귀하께서는 향후 10년간 대전지역의 인구증감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①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② 인구 변화가 없을 것이다 ③ 인구가 줄어든 것이다.
16. 귀하께서는 향후 10년간 대전지역의 인구 유출입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①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이다 ② 인구 유출입이 같을 것이다 ③ 인구유출이 증가할 것이다

III. 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대전시)의 역할

17. 귀하께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을 위해 다음의 어떤 기관(단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전시청(구청포함) ② 대전교육청 ③ 공공기관 ④ 지역 산업체
 ⑤ 시민사회단체 ⑥ 종교단체 ⑦ 기타 _____
18. 귀하께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을 위해 대전시가 추진한 시책 중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있다면: _____)
 ② 없다
19. 귀하께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소요재원 확보 ② 대전시 전담조직의 기능 확대 ③ 고령친화적 도시기반 시설 확충
 ④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⑤ 기타 _____

20. 귀하께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시가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노인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 ② 노인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③ 은퇴과학자의 사회(봉사)활동 영역의 발굴 및 정보 제공 ④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⑤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등 운영 지원 확대 ⑥ 기타 _____
21. 귀하께서는 대전지역이 타 도시에 비해서 고령인구가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IV. 응답자의 특성

공 무 원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이상
	3. 귀하의 직급은? _____ 급
	4. 공무원 경력은? ①2년 미만 ②3~5년 ③6~10년 ④11~15년 ⑤16~20 ⑦21년 이상
	5. 귀하의 거주지는? ①동구 ②중구 ③서구 ④유성구 ⑤대덕구 ⑥기타(_____)
	6. 귀하의 출생지는? ①대전지역 ②충청지역 ③호남지역 ④영남지역 ⑤수도권 ⑥기타(_____)
일 반 시 민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①초졸이하 ②중졸 ③전문대졸 ④대졸이상 ⑤기타(_____)
	4. 귀하의 거주지는? ①동구 ②중구 ③서구 ④유성구 ⑤대덕구 ⑥기타(_____)
	5. 귀하의 출생지는? ①대전지역 ②충청지역 ③호남지역 ④영남지역 ⑤수도권 ⑥기타(_____)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2>**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4.3.18.] [법률 제12449호, 2014.3.1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044-202-337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제1절 저출산 대책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23.]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제2절 고령사회정책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23.]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8조(경제와 산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2008.2.29.>

⑤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업무의 협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12.5.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5.23.>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1.18., 2012.5.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신설 2012.5.23.>
 -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23.> [전문개정 2008.2.29.]

제24조 삭제 <2008.2.29.>

제25조 삭제 <2008.2.29.>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국회보고) 정부는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조사 및 연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인구의 날) 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

제31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32조(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2449호, 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3>**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5-04-17 조례 제 4441호

(일부개정) 2015-08-14 조례 제 4500호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노년층에게 맞춤형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일자리 창출과 보급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비노년층”이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5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노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일자리 창출과 보급 등을 통하여 예비노년층의 사회참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사무) 센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창업, 고용, 직업 등 일자리를 원하는 예비노년층의 수요조사
2. 실무중심의 맞춤형 직업능력개발교육
3. 취업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취업지원
4. 일자리 발굴 및 직업상담·정보 제공
5. 예비노년층에 적합한 일자리 알선
6. 직업능력개발교육 이수자들의 모임 구성 및 지원
7.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와의 연계시스템 구축
8. 그 밖에 예비노년층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

제5조(조직 등) 센터에는 센터장 및 사무국장 각 1명과 직원 2명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두되, 직원은 직업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예비노년층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일자리 창출의 원활한 추진과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예비노년층 일자리사업 교육·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예비노년층의 일자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제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직전 회계연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4441호, 2015.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2) 생략

(113)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 생략

<부록 4>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조례

(제정) 2015-04-17 조례 제 444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노인일자리사업의 권장)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품의 우선 구매 및 구매 촉진)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440호, 2015.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본연구보고서 2016-04

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거버넌스 구축 방안

발행인 유재일

발행일 2016년 11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287-2)

전화 / 530-3517, 팩스 / 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 제일문화사 TEL 042-672-5193 FAX 042-672-5194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